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II)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raining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최창욱 · 박수선 · 남화성 · 이영민

■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박수선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

■ 남화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영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CONTENTS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15
2. 국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	18
3. 외국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	24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 탐색	49
5.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52
제3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5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	55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57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매뉴얼	111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일정(안)	138
제4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	145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145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영역	147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도구	14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1
1. 결 론	151
2. 정책제언	153
참고문헌	155
Abstract	159

표 차례

〈표 2-1〉 법무부·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주최 교육 내용	19
〈표 2-2〉 법무부·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최 교육 내용	20
〈표 2-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 기초과정 프로그램	21
〈표 2-4〉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조정 전문가 훈련과정 프로그램	22
〈표 2-5〉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기초과정) · 23	
〈표 2-6〉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심화과정) · 23	
〈표 2-7〉 갈등해결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주요 내용	51
〈표 2-8〉 일리노이 갈등해결연구소의 중재자 교육 6단계	51
〈표 2-9〉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53
〈표 3-1〉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 비교	60
〈표 3-2〉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	65
〈표 3-3〉 조정 역할극 관찰자 체크리스트	96
〈표 3-4〉 역기능적 조정기술 목록	109

그림 차례

〈그림 2-1〉 형사화해조정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에 주는 공헌	16
〈그림 3-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	55
〈그림 3-2〉 조정 과정	91
〈그림 4-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영역	147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조정 모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형사조정 모델을 제시하고 형사조정과정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형 형사조정 모델의 개발과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형사사법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회복적 사법의 이념의 구현이라는 형사조정의 근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형사조정 시행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개발팀(PDT: Program Development Team)을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범적용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조망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주로 국내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국외는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4개 국가 및 지역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현장의 내용전문가와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연구진을 중심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팀을 구성·운영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장 적용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안)은 실제 조정실무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프로그램 진행상의 참고자료와 프로그램 진행용 워크시트를 개발·첨부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먼저, 기 개발된 프로그램(안)을 이용하여 전국 약 30명의 조정실무가(조정위원)를 대상으로 하루 일정으로 시범 실시하였다. 시범 실시 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3. 연구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최종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전개과정과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의를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①회복적 사법의 이해, ②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③조정과정 훈련, ④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⑤조정실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회복적 사법의 이해 부분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회복적 사법의 대상, 회복적 사법의 실천, 회복적 사법의 평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②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에서는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의 이해, 형사화해 조정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③ 조정과정 훈련에서는 갈등해결의 개념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과정과 절차, 조정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④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에서는 조정자의 자세, 조정자의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정자의 기술은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대안탐색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 ⑤ 조정실무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해당된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세부내용의 설명자료를 개발·제시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별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활용이 지역별, 시·공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시범실시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였고, 1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16주(2시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를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평가영역, 평가도구(예시) 등을 제시하였다.

4. 정책제언

위와 같은 연구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향후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첫째, 특정대상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및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조정행위를 하는 조정위원의 프로그램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인식하며, 조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여 실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강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와 보급이 필요하다. 실제 형사화해 조정위원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퇴직 교원, 지역사회 유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조정의 원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나 각 센터들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필요한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위원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과 겸임해서 조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를 전담할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교육훈련센터로 두고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역 교육훈련센터로 지정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을 직무연수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연수를 위한 전문연수도 필요하다.

여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비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만난 본 조정위원들의 경우 필요에 의해 연수에 참여하지만 연수경비를 자부담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과감하게 연수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참여를 독려하여 전문적인 자질을 높힐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들은 응보적 형사사법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회복적 사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러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응보적 사법제도가 가지는 한계 즉, 재범률의 증가, 범죄 억제 능력의 한계, 피해자의 권리보호 미비, 가해자와 피해자간 자율적인 합의 유도 부족 등에 기인한다.

회복적 사법제도는 가해자, 피해자, 가족 및 지역사회가 한 자리에 모여 범죄로 인하였거나 범죄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형식으로 범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와 그들이 야기한 손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범죄자에 대한 보상, 지역사회 내에서 양자 간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van Ness & Strong, 1997; 황지태·노성호, 2006; 재인용).

한국에서도 사건해결의 초기단계에서 실시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널리 소개되어 있고, 사법개혁위원회에서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한국 학계의 연구는 아직 회복적 사법의 이념적 기초에 관한 추상적 논의나 서구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소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박광섭·김성돈, 2006).

회복적 사법제도의 실천적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선진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사사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와 가

해자 간의 화해조정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형사사법기관에 제기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일정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대화절차를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2008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I)'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화해조정 정착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영현황 및 평가에 대한 비교고찰, 형사조정실무에 대한 평가분석, 형사사법체계 내 화해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법이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화해조정을 통한 형사사법비용절감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화해조정 시행 모델 구축, 형사화해조정제도 입법방식 정립, 형사화해조정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도에 수행한 3가지 연구주제 중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제도와 형사화해조정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실제 형사화해조정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조정실무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중재를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개발팀(PDT: Program Development Team)을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며, 시범 적용 후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성을 탐색하고,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하위영역을 범주화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필요성 탐색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분석
 - 국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분석
 - 국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분석
 - 시사점 도출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7단계)
 - 1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프로그램개발팀
(PDT: Program Development Team) 구성·운영
 - 2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확정
 - 3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선정
 - 4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설계(목적 및 목표 진술, 내용구체화, 운영방법설계 등)
 - 5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 개발
 - 6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 시범적용-단기프로그램으로 적용
 - 7단계: 수정·보완 및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최종 완성

나.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전문가협의회 및 프로그램개발팀(PDT) 구성·운영, 시범적용 및 수정보완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헌연구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분석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주요 내용 분석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 사례연구
 -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분석
 - 시사점 도출
- 전문가협의회(프로그램개발팀 구성·운영)
 - 연구진 4명, 관련 전문가 5명 등 총 9명의 프로그램개발팀 구성·운영
 - 프로그램(안) 개발
- 시범적용 및 수정·보완
 - 단기프로그램으로 개발된 교육훈련프로그램(안) 적용
 - 교육훈련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완성

제2장

이론적 배경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필요성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의 고소사건과 소년·의료· 명예 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민간단체(조정실무가)가 참여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제도이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기원을 두고 우리나라는 200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조광훈, 2008).

형사화해조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다(The Scottish 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 2008).

첫째,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고, 행동변화를 함으로써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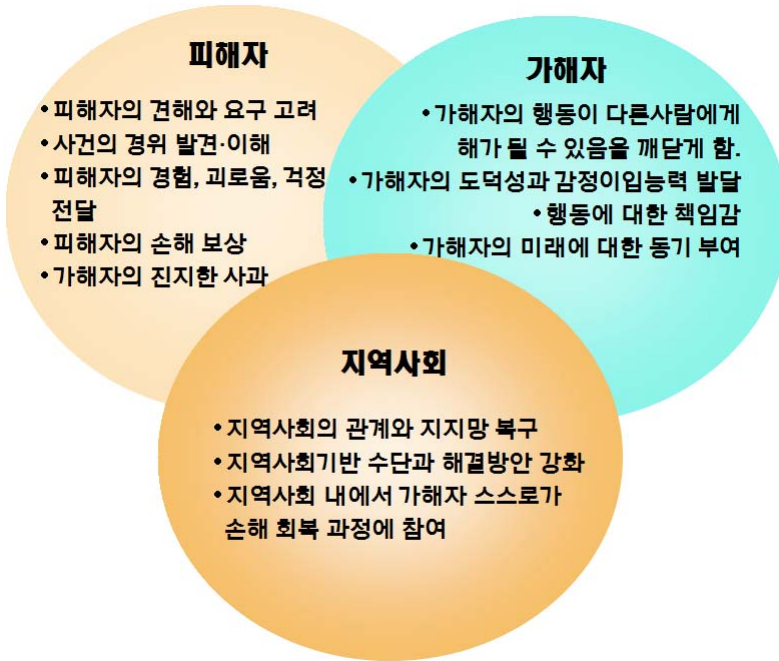
둘째, 피해자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셋째, 자유의지로 선택한 결정과 행동들은 진정한 책임감, 치유, 변화 등을 유발한다.

넷째, 처벌이나 보복, 복수보다 형사화해조정 과정은 보상이나 청원을 위해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다섯째, 무슨 일을 저질렀건, 누구인지 간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

한편 형사화해조정제도는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에 다음 [그림 2-1]과 같은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The Scottish 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 2008).



〈그림 2-1〉 형사화해조정의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에 주는 공헌

먼저, 형사화해조정은 피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준다. 첫째, 피해자의 견해와 요구를 고려하게 한다. 둘째, 피해자가 그 사건이나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한다. 셋째, 피해자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과 걱정들을 전할 수 있게 한다. 넷째,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보상하게 한다. 다섯째, 피해자가 진지한 사과를 받게 한다.

다음으로 형사화해조정은 가해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준다. 첫째, 가해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둘째, 가해자의 도덕관념과 감정이입능력(capacity to empathize)을 발달시킨다. 셋째, 가해자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넷째, 가해자가 미래에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형사화해조정은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은 기회를 준다. 첫째, 지역의 관계망과 지원망을 복구하고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과 해결방안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게 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에서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 사람들 스스로가 그들이 행한 손해를 회복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형사화해조정제도 시행배경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다. 형사화해조정제도는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의 한계 즉, 응보적인 사법제도로 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근본적 갈등해소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반성, 수사기관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 및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피해자의 권리인식 강화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다(조광훈, 2008).

이렇듯 가치 있고 중요한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간과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실제 피해자, 가해자와 함께 형사화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조정실무가의 문제이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는 변호사, 법무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1,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몇몇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 형사조정현장의 문제점으로 조정실무가들이 형사화해 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부족,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의 부족, 검찰수사관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강압적인 형사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은 1년에 2차례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당 1년에 1일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의무사항이 아님) 뿐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도 강의위주의 정보제공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조정실무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의 역할과 기능에 발맞추어 그들이 지녀야할 지식과 기술을 구조화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꾸준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장단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도 기획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기술들을 함양할 수 있는 장단기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 조정실무가들이 효율적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하며, 우리나라에 형사화해조정제도가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국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과 사례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그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천하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도이다.

2006년 4월,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서 사적분쟁 위주의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조정제도를 시범시행 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 3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민간공익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형사조정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후 전국 57개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합리적·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용 절감, 고소남용의 폐단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형사조정위원)는 변호사, 법무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전국적으로 약 1,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정의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사자 참여에 의한 분쟁해결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사법기관에 제기된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일정한 조정절차를 통하여 해당 범죄행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대화절차이다. 이러한 대화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법적 평화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실천적 모델로써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실무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실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적 사법의 철학적 의미와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관계와 회복을 다루는 제3자로서의 역할과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의 의미를 살리는 데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의 실무능력은 질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조정실무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도 매우 일천하다.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형사화해조정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정부차원

의 법무부 형사조정위원 교육프로그램과 민간차원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교육훈련프로그램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사화해조정제도의 도입이 얼마 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할 것이다.

가. 법무부 주최 형사조정위원 교육

법무부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형사조정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주요 대상은 현재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3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민간공익기관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의 형사조정위원들이다.

법무부 주최 형사조정위원 교육은 2008년도 상반기에는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하반기에는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와 공동주최로 진행하였다. 2008년 한해 총 500여명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주최

- (1) 일정/시수: 2009년 4월 27~30일(4회 교육), 1회당 6시간 하루교육
- (2) 대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 (3) 교육내용

〈표 2-1〉 법무부·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주최 교육 내용

강 좌	시 간
○ 형사조정 이론	1
○ 형사조정 실무	1
○ 조정의 기술	1
○ 범죄피해자의 이해	1
○ 형사법에서의 갈등조정	1
○ 형사조정 실태와 조정위원의 역할	1

- (4) 특성: 법무부·이화여대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 형사조정위원 교육은 조정위원 개인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로 강의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프로그램

내용들이 지식함양에 치우쳐 있다.

2) 법무부·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공동주최

- (1) 일정/시수: 2008년도 9월 3/5/8일 3회 교육. 1회당 6시간 하루교육
- (2) 대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 (3) 교육내용

〈표 2-2〉 법무부·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주최 교육 내용

강 좌	시간
○ 형사조정 이론	1
○ 한국의 갈등사회 구조와 전망	1
○ 형사조정 실무	1
○ 시민사회와 시민의식	1
○ 갈등문화와 갈등관리	1
○ 형사법의 갈등조정 및 예방기능	1

(4) 특성: 법무부·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공동주최 교육은 이화여대 법학연구소와의 공동프로그램처럼 조정위원 개인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로 강의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측면에서 프로그램 내용들이 지식함양에 치우쳐 있다.

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조정자훈련 프로그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는 2002년부터 청소년, 교사, 일반 성인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갈등해결과 평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양성을 위하여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전문가, 조정 전문가, 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21세기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하면서 회복적 사법제도의 모델 중 하나인 ‘Family Group Conference’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의 조정실무가로 참여하면서, 관련 사례연구도 진행하였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는 조정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조정기초 단계 프로그램, 조정전문가 훈련프로그램,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프로그램의 3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선행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다음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조정기초단계 프로그램인 갈등해결 기초과정을 이수하면(30시간 내외) 중급과정으로 조정전문가 훈련(38시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정전문가 훈련 이수자가 최종적으로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과정은 다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진행되는 ‘피해자기해자대화모임’의 조정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조정기초단계프로그램, 조정전문가 훈련프로그램,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1) 조정기초단계 갈등해결 기초과정 프로그램

- (1) 시수: 30시간 내외
- (2) 프로그램내용

〈표 2-3〉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갈등해결 기초과정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명
1	갈등해결과 평화 입문
2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3	갈등분석 -분석을 왜 하는가? 분석방법 이해, 갈등분석 실습
4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기초
5	창의적 아이디어 모으기 실습, 의사결정의 여러 방법
6	조정(mediation) 이해 1 - 조정이란? 조정의 원칙
7	조정 이해 2 - 조정자의 역할, 기술
8	조정 이해 3 - 조정 기술
9	조정 이해 4 - 조정의 과정 및 단계
10	조정실습

- (3) 특성: 조정기초단계인 갈등해결 기초과정 프로그램은 갈등해결과 평화입문부터 조정실습까지 10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법무부의 교육프로그램과는 달리 각 프로그램별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념적인 이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조정실무와 관련하여 조정의 개념과 원칙, 조정자의 역할과 기술, 조정 기술, 조정의 과정 및 단계, 조정실습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2) 조정 전문가 훈련 과정

- (1) 시수: 38시간 내외
 (2) 프로그램내용

〈표 2-4〉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조정 전문가 훈련과정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명
1	오리엔테이션
2	조정 이해-한국사회의 평화적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
3	조정 실습1
4	조정 단계1 - 준비단계
5	조정 단계2 - 도입, 입장나누기
6	조정 단계3 - 쟁점규명, 문제풀기, 합의, 평가
7	조정 기술 - 바꾸어 말하기, 질문
8	조정 실습 2
9	조정 실습 3

- (3) 특성: 조정전문가 훈련과정은 조정기초단계인 갈등해결 기초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총 9개의 강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조정이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평화적 갈등해결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과 조정단계(준비, 도입, 입장나누기, 쟁점규명, 문제풀기, 합의, 평가) 3강좌와 조정기술 1강좌, 조정실습 3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3)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

- (1) 시수: 기초과정 30시간 내외, 심화과정 24시간

(2) 기초과정 프로그램내용

〈표 2-5〉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기초과정)

강좌	프로그램 명
1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2	회복적 사법 이해 1 - 회복적 사법이란? 개념과 원리
3	회복적 사법 이해 2 - 외국 사례
4	회복적 사법 이해 3 - 한국사회 적용 사례, 절차
5	회합 과정과 절차 이해 / 모델 소개
6	실습 1 - 예비조정
7	실습 2 - 도입
8	실습 3 - 입장나누기
9	실습 4 - 쟁점규명, 합의, 추후관리
10	실습 5 - 종합실습 1
11	실습 6 - 종합실습 2

(3) 심화과정 프로그램내용

〈표 2-6〉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회복적 사법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심화과정)

강좌	프로그램 명
1	회합 실무 1 - 면담기술 - 의뢰처 담당자, 당사자
2	회합 실무 2 - 조정과정 실습
3	회합 실무 3 - 조정과정 실습
4	회합 실무 4 - 양식, 서류 작성 요령

- (4) 특성: 회복적 사법 조정자훈련 프로그램은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정훈련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과정 프로그램과 심화과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은 회복적 사법 이해 부분과 실습으로, 심화과정은 회합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외국의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들이 시작된 1970년대부터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복적 사법의 발전역사에서 조정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회복적 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기둥은 법적 제도의 마련과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정자를 엄선하고 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초기 형사조정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Zehr, 1990). 조정자(mediator) 또는 진행자(facilitator)라고 불리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의 틀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사실 회복적 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개념 가운데 한 가지는 자발성(voluntarism)이다(van Ness & Strong, 199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자발적인 동의하에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원래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비단 분쟁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형사조정과 같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정자와 진행자도 민간영역의 자발적 자원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을 성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인 조정자와 진행자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는 것은 동시에 그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기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의 딜레마가 놓여있다. 자발적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조정자와 진행자로써의 질적 수준을 유지 및 발전해야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의 형사조정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도 결국 그 제도를 직접 실천해나가는 조정실무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정실무가들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조정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 형사사법의 틀에서 벗어나 이미 오랫동안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온 여러 나라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의 형태와 양식은 각 나라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구조보다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지, 또한 어떻게 자발적 조정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조정 훈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4개 국가 및 지역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접근성 면에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연구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 국가들의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개괄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형사조정 훈련

1989년부터 소년범죄를 다룸에 있어 회복적 사법 철학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최초로 입법화한 프로그램인 가족집단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을 운영해온 뉴질랜드는 회복적 사법 실천에 있어 어느 나라 보다 앞서 있다. 소년범죄 분야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뉴질랜드의 3개 지방법원(Auckland, Waitakere, Hamilton)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 회합(Restorative Justice Conference)이란 이름으로 형사조정제도가 4년 동안 시범 운영되어왔다. 회복적 사법 회합(RJC)은 법원에 의해 훈련되고 인정된 진행자(facilitator)가 법원이 의뢰한 형사사건을 맡아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들의 가족 및 지원자들과 함께 회합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끄는 것이다. 회복적 사법 회합(RJC)은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가해자로 하여금 재범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요목표로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이 시범 프로젝트의 평가를 기초로 하여 현재 뉴질랜드 사법부는 전국 30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운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Community-Managed Restorative Justice)을 통해 각 지방법원이 지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 단체에 사건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고, 사법부의 회복적 사법 기금을 통해 이 단체의 진행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¹⁾

1) Ministry of Justice New Zealand, <http://www.justice.govt.nz/policy-and-consultation/restorative-justice>

2)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

뉴질랜드 여러 지역의 지방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는 진행자에게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이해와 기술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훈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회복적 사법 회합(RJC) 진행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²⁾

① 능력

- 피해자, 가해자, 기타 참가자들과 회합 전, 중, 후에 대화할 수 있는 능력
- 회합이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전모임을 토대로 가장 적합한 회합을 설계하는 능력
- 유효일정 안에 회합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능력
- 회합을 위해 참가자들을 준비시키는 능력
- 회합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능력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도록 진행하는 능력
- 담당판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 회합이후 모니터링 하는 능력

② 이해

- 회복적 사법 원칙 이해
- 피해자와 가해자의 필요 이해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오리 전통 이해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른 문화적 요소 이해
- 형사사법체계와 재판과정 이해
- 양형기준과 원칙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회합에 미칠 영향 이해
- 연관된 관련 규칙과 법률 이해

③ 정보

-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역에 있는 유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2) Ministry of Justice New Zealand, <http://www.courts.govt.nz/crj/manual/introduction.html>

- 회복적 사법 회합(RJC) 프로그램 관련기관, 피해자보호기관, 보호관찰기관, 법원 직원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
- 회복적 사법 회합(RJC)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된 정보

3)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은 총 8개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조정자로서 개인적인 능력(가치,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며 회복적 사법 회합(RJC)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트레이닝을 받는다.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는 회복적 사법 회합(RJC)이기 때문에 진행자 훈련의 내용도 회합 준비 단계에서 진행 및 사후 처리 과정까지 매우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진행자 훈련 매뉴얼의 주요내용이다.³⁾

<과정 1>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이 과정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역사와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목표와 원칙 등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의 역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도 그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교육된다.

<과정 2> 회복적 사법 회합 프로그램

이 과정에서는 회복적 사법 회합(RJC)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주요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법원에서 의뢰가 되는지, 개괄적인 진행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회합의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회복적 사법 회합(RJC)에 누가 참가하게 되고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배우고 회합의 진행과정에 대해 큰 틀에서 학습한다.

3) Ministry of Justice New Zealand, <http://www.courts.govt.nz/crrj/manual>

〈과정 3〉 피해자와 가해자 이슈

일반적으로 알려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슈에 대해 배우는 것이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이다. 법과 규정에 나타난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받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왜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유래되었는지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를 경험하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상태와 어떠한 정신적 외상 상태가 나타나는지 배우고, 피해자의 심리, 사고, 행동, 신체적 변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알아두어야 할 내용과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가해자의 심리상태와 행동패턴에 대한 배경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회복적 사법 회합(RJC)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져야 할 피해자와 가해자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된다.

〈과정 4〉 회복적 사법의 문화적 적용

뉴질랜드의 원주민과 이주정착민 사이의 문화와 전통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자들은 마오리의 전통적인 갈등해결 모델에 대해 배우고 현재 마오리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과 겪는 충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 외에 각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뉴질랜드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간과 관점의 차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배경을 습득한다. 문화와 민족적 차이를 넘어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과정 5〉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진행자 기술

이 과정에서는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진행자로서 요구되는 3대 자격에 대해 배우게 된다. 즉, 진행자의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기본적 요소들을 배우고 이상적 진행자의 자질에 대해 학습한다. 여는 대화, 적극적 경청, 침묵의 활용, 열린 질문, 비귀 말하기 등 회합의 무난한 진행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돌발 상황에 봉착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도 듣는다. 회합 참가자의 문화적, 인종적, 성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경험도 학습한다. 또한 진행자로서 필요한 기본적 갈등해결 교육을 경험하고 진행자의 태도로서 중요한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내용을 훈련받는다. 무엇보다도 일반적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훈련 내용이다.

〈과정 6〉 회복적 사법 회합(RJC) 준비과정

이 과정에서는 회복적 사법 회합을 잘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요소에 대해 배운다. 사전 회합 점검요소를 체크하고 준비단계에서의 진행자의 역할에 대해 배운다. 진행자가 사전 준비모임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알게 된다. 진행자가 회합을 설계하고 어떻게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이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관련 지원그룹들이 회복적 사법 회합(RJC)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보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누가 진행자를 맡는 것이 좋을지, 몇 명의 진행자가 이상적일지, 참가자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참가자 사이의 신뢰문제가 연관되는 민감한 문제인 비밀보장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의 기준 등에 미리 배우게 된다.

〈과정 7〉 회복적 사법 회합(RJC) 운영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진행과정에 대해 익히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회합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부터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할지 세부적인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소개, 기본규칙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 문제해결책 찾기, 합의점 찾기 등 다양한 과정을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만들어진 합의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지 감독자(supervisor) 역할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야 하고 어떻게 회합을 마무리 할 것인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불필요한 논쟁, 일방적 중단, 지나친 감정대립, 중간에 필요한 쉬는 시간, 개별모임, 진행자간 협의 시간 등 구체적이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해보고 그 대응책을 찾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회합 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진행자로서 각 진행과정별 필요한 기술에 대해 훈련받는다.

〈과정 8〉 회복적 사법 회합(RJC) 이후 과정

이 과정에서는 회합이후에 진행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회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요령을 배우고 어떤 경로를 통해 회합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의뢰기관과의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학습한다. 각종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운다. 또한 회합 참가자 평가서, 슈퍼바이저 면담, 진행팀 자체 평가 및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진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받아보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진행자의 스트레스 해소이다. 회합과정에서 분쟁 당사자뿐만 아니라 진행자도 고도의 감정적, 심리적 긴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회합 이후 긴장을 풀고 휴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뉴질랜드 회복적 사법 회합(RJC)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 평가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회합(RJC)의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의 초점은 법원이 의뢰하는 사건을 다루는 회합에 필요한 진행자를 양성하는데 있다. 그렇지만 진행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스텝이나 지역의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훈련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법원에서 의뢰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을 다뤄야 하는 만큼 훈련 내용이나 형식도 매우 세부적일 필요가 있고 일관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국가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조정자를 국가 공무원으로 할 경우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회복이나 화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보다 문제해결의 결과 중심적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성과보다는 소명의식이 강한 자원봉사자에 기초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형사조정 참여하게 하는 것은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 결과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 법원이 훈련비용을 마련하여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회복적 사법 단체들을 훈련하면서 일종의 진행자 허가(인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뉴질랜드의 훈련 모델은 양측의 한계와 장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 보면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자 훈련은 지식과 기술훈련, 그리고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진행자로서 법률적 지식이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회복적 사법 선진국답게 회복적 사법의 이해와 조정자로서의 태도 등에도 많은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다. 또한 진행자로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진행자 훈련교육에 있어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문화적 요소를 감안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복적 사법 발전에 기여한 마오리 전통과 문화에 대해 각별한 연구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전체 인구비율대비 범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마오리 사람들의 현실적 문제와 전통적 방법과 현재의 제도에서 오는 마찰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캐나다

1) 캐나다의 형사조정 훈련

캐나다는 전 세계 회복적 사법의 역사에서 빼 수 없는 그 유명한 엘미라(Elmira) 사건이 있었던 나라이다. 1974년 캐나다 온타리오 엘미라라는 도시에서 당시 기물피손으로 기소된 두 소년범의 문제를 좀 더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작된 새로운 작은 시도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ictim-Offender Reconciliation Program)으로 발전하게 될 줄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Zehr, 1990).

엘미라 사건이후 캐나다에서는 민간 메노나이트 기독교 기관인 Mennonite Central Committee(MCC)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들이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온타리오(Ontario)주의 키치너(Kitchener)지역에서 활동 중인 Community Justice Initiative(CJI)와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 주의 랭리(Langley)지역에서 생겨난 Fraser Regio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 Association(FRCJIA)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키치너 지역의 CJI 프로그램은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조정에 대해 특별히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랭리 지역의 FRCJIA는 살인을 포함한 강력 사건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단체 주도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97년부터는 캐나다 왕립경찰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캐나다 교정국 내에 회복적 사법과 분쟁해결부서(Restorative Justice and Dispute Resolution Unit)를 통한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은 전국으로 그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렇지만 캐나다 교정국에 의해 인정받는 강

력범죄를 다루는 조정자의 수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현실이다.⁴⁾ 2003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소년사법(Youth Criminal Justice Act)의 경우 회복적 사법의 요소를 강화하여 소년범죄의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가족집단회합의 형태를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는 민간단체가 더 오랜 역사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각 지역의 형사사법기관들이 이들의 운영하는 단체에 사건을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민간단체의 형사조정을 후원해 오고 있다(탁희성·강우예, 2008). 특히 랭리의 RFCJIA의 경우 더 이상 경미사건을 다루지 않고 강력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형사사법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2) 캐나다 랭리 지역의 VOMP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⁵⁾

랭리 지역의 RFCJIA에서 199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책임의식, 치유(Healing), 트라우마(Trauma)를 일으키는 범죄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문제종결 등이다. 강력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을 통해 직접 대면을 하는 동안 조정자는 단순 제3자 개입자가 아니라 치유적 대화를 이끄는 협력적 진행자가 되어야 한다. VOMP를 통해 강력 범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주는 것은 목표로 한다.

- 범죄행위와 그 결과로 생겨난 문제들과 불안요소를 밖으로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준다.
- 참가자로 하여금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불안과 근심의 정도를 낮추고 치유적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공급한다.
- 가해자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복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과 의문에 대해 직접 이야기 한다.

4)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http://www.csc-scc.gc.ca/text/rj/vom-eng.shtml>

5) 2008년 6월 캐나다 랭리에 위치한 Fraser Regio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 Association을 방문하여 7일간 Restorative Justice교육과 VOMP연수를 다녀온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www.peacecr.org)의 조정자들의 방문기록집 “회복의 여정, 평화적 갈등해결의 현장을 찾아”와 FRCJIA의 홈페이지(www.cjibc.org)을 참고

- 범죄의 영향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회복과 치유의 임무를 감당하는 헌신되고 감수성이 뛰어난 스텝을 공급한다.

3) 캐나다 랭리 지역의 VOMP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의 내용⁶⁾

랭리 지역의 FRCJIA에서는 총 5일과정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 조정자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 5일의 조정자 훈련 중에 2일은 분쟁조정 기초훈련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3일은 VOMP 훈련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원칙을 이해하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훈련 내용 중에는 실제 사항과 비슷한 세팅 속에서 경험 많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VOMP를 운영하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훈련 프로그램의 주 교재로 사용되는 매뉴얼(Inviting Dialogue: Restorative Justice and Victim Offender Mediation Training Manual)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Inviting Dialogue의 주요내용이다.

<1장> 회복적 사법: 철학적 배경

1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회복적 사법의 가치, 회복적 사법의 지침,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써의 회복적 사법 등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에 대응하는 두 가지 커다란 패러다임인 응보적 접근(Retributive Approach)과 회복적 접근(Restorative Approach)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조정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장> 조정과 진행을 위한 기본적 기술

2장에서는 조정자 또는 진행자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들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 입장에서 실익중심의 문제해결 등 갈등해결교육(Conflict Resolution Education)의 기초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 Thomas-Killman의 갈등연습기

6) Eric Gilman & Christie Bowler, "Inviting Dialogue: Restorative Justice & Victim Offender Mediation Training Manual Fifth Revised Edition" Fraser Regio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 Association, 2004

트를 활용하여 갈등대응유형에 대한 진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조정자와 진행자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훈련과 분노조절 및 중립성 훈련 등도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의사소통 연습지와 질문예문 등 다양한 실습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3장〉 조정자의 역할

3장에서는 조정자가 갖춰야할 기술적 측면 외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조정자의 태도와 성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자의 마음자세의 기본으로 강조하는 두 가지 요소는 다른 사람을 선입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유연성과 판단 없이 평등하게 남을 배려하는 상호존중의 자세이다. 또한 5가지 도움 모델을 통해 갈등해결 모델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 갖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회복적 조정자(Restorative Mediator)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지하는 것과 다양한 형태의 조정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협력조정자와 같이 조정을 진행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4장〉 형사사법 제도의 이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대개 전체적 형사사법 제도 속에서 연관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조정자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해하고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등장하는 이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책임이 있다. 4장에서는 캐나다의 형사사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주요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VOMP는 전체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배우고, VOMP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사건들이 VOMP로 의뢰되는지, 조정자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배경지식을 학습하게 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요구 등 소위 피해자-가해자 이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며, 기본적 조정과 회합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VOMP의 개괄적 진행과정을 소개하여 VOMP가 일반 형사사법적 과정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5장〉 VOMP 준비 및 설계

5장에서는 조정자가 VOMP 참석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정자가 피해자, 가해자와 접촉하는 방법과 초동 접촉 시 점검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화로 당사자들에게 처음 접촉을 시도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전화대화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있는 전화대화 가이드북이 포함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VOMP가 성립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전준비 모임을 어떻게 디자인 할지와 사전모임을 통해 조정자가 무엇을 파악하고 당사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다. 당사자들을 따로 만났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6장〉 피해자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 (VOMP) 진행

6장에서는 VOMP의 진행 4단계(소개 및 규칙 만들기, 상호 이야기 나누기, 핵심 쟁점이 되는 문제 파악하기, 해결책을 논의하여 합의문 작성하기)에 대해 숙달하는 훈련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조정자가 VOMP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진행단계 파악, 적절한 시간안배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정자의 권위와 역할에 대해 소개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합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합의서 작성 시 필요한 적절한 용어 선택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샘플 합의문도 작성하게 된다. 조정자가 VOMP의 진행과정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 눈에 VOMP의 진행단계와 단계별 해야 할 일을 정리한 VOMP outline이 큰 도움이 된다. 개인 간 VOMP가 아니라 집단 간 또는 집단과 개인 등 여러 다양한 형태로 갈등구도가 잡힐 경우 어떻게 조정을 설계하고 진행할 것인가 대한 조언도 주어진다.

〈7장〉 고려해야 할 사항

7장에서는 조정자가 VOMP를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조정자가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칠 때 할 수 있는 일들, 힘의 불균형 문제, 개별모임의 활용, 비밀보장 이슈, 불법적 사실의 폭로, 폭력사태 조정 등 조정자가 미리 숙지하면 실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 밖에

조정자가 조정과정 가운데 임의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설정을 전제로 실질적인 연습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8장〉 역할극(Role-Plays)

역할극은 조정자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VOMP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다. 실제로 VOMP를 운영해야 할 조정자에게 있어 역할극을 통해 실천과 같은 조정을 연습해본다는 것은 훈련 프로그램에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 중에 하나이다. 8장에서는 다양한 분쟁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역할극을 통해 조정자들이 조정자로서 여러 가지 기술, 과정, 역할에 대해 직접 경험하게 하고 본인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도록 한다. 특히 역할극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할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내용들이 이 후 조정자로서 진행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적 이해를 제공한다.

4) 캐나다 랭리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 훈련 프로그램 평가

근 25년간 캐나다에서 오랜 전통과 전문성을 갖고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던 Fraser Regio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 Association(FRCJIA)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VOMP의 활용 면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방 형사사법기관의 협력 속에서 FRCJIA가 제공해왔던 훈련 프로그램은 강력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감수성(sensitivity)을 높이고 선입관(prejudice)을 줄이는 조정자 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Gilman & bowler, 2004). 또한 조정의 치유적(healing)이고 치료적(therapeutic) 기능을 간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에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에 충실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북미의 많은 회복적 사법 실천 단체들이 그렇듯 실적을 올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중심적인 운영보다 휴머니티, 용서, 화해 등에 기초한 운영철학이 오랜 전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성을 기초한 민간기관에 의해 센터가 운영되면서 가능했던 일일 것이다. 많은 안내와 감정조절을 필요로 하는 강력사건 대상의 VOMP에서 숙련된 조정자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며 따라서 그런 조정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은 높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다. 유럽

1) 유럽의 형사조정 훈련

유럽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대표적 형태인 피해자-가해자 조정이 현대적 형태를 띠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이다. 초기 노르웨이(1981년)와 핀란드(1983년)에서 첫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198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처음으로 소년재판에 공식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인 “Out-of-Court Offence Resolution”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도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들이 정부와 민간의 지원 속에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독일은 그 후로 현재 400 여개의 서비스가 운영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형사조정 프로그램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몇몇 나라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발달하였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그룹에 의해 발달하였다. 조정 서비스도 국가주도적인 것과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형사조정은 형사사법과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의뢰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형이후 의뢰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성장해왔다.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형사조정의 법적기반이 마련되고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었고, 영국, 핀란드,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들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법제화된 형사조정의 틀을 갖게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유럽의 몇 나라(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형사조정의 시범실시를 통해 법제화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다. 최근 들어서는 동유럽 국가(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러시아 등)들에서도 변화를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⁷⁾

급속하게 성장한 유럽의 회복적 사법 프로젝트와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약 8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성장 속에서 국경을 떠나 서로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겨나면서 2000년 12월에 결성된 것이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이다. EFRJ는 비정부기구로써 회복적 사법 연구자, 정책기획위원, 조정자 및 진행자 등 회복

7)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http://www.euforumj.org/About/background.htm>

적 사법 실무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각 나라의 형사사법 관련 연구, 정책, 학교 등의 기관들과 법무부 산하 회복적 사법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회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위원회, 훈련위원회, 학교 내 회복적 접근 실천위원회, 정보위원회, 출판위원회 등의 여러 위원회 분과별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⁸⁾

유럽은 국가별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각각 다르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각 국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운영자(조정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다르게 개발해왔다. 그렇지만 유럽 전체 회복적 사법 관계자의 최대 네트워크인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에서는 좀 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자풀(the Pool of Trainers)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훈련자풀에 선발되면 EFRJ가 공인하는 훈련과 경험을 가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트레이너가 된다. 훈련자풀의 회원은 EFRJ의 네트워크를 통해 훈련정보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포럼이 주최하는 여름계절학교와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의 훈련 프로그램의 목표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은 유럽 전역에 피해자-가해자 조정(VOM)과 기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도록 돕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회복적 사법 원칙, 윤리, 훈련, 실천이 잘 이뤄지도록 개발 및 연구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Recommendation for the Training of Mediators in Criminal Matters)’를 지정하여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하도록 돕고 있다. 형사조정자 훈련 권고는 2003~2004년 2년 동안 형사조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고 검증된 비교연구를 통해 형사조정 훈련이 어떻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도출한 내용이다. 형사조정자 훈련 권고의 목표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을 통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조정자는 특별한 태도와 기술과 더불어 감수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럽의 각 나라의 조정 훈련 프로그램 간에 교류와 공유를 통해 각기 운영되고 있는 훈련 모델을 평가하고 상호비교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본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European Forum for

8)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http://www.euforumj.org/About/structure.htm>

Restorative Justice, 2004).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의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⁹⁾

- <1> 조정 참가자는 조정자가 투명하게 조정에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훈련에 투명성관련 훈련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 <2> 모든 훈련에는 지식, 기술, 개인적 능력부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3> 한 가지 모델이 아닌 다양한 훈련 모델이 제공되어야 한다. 훈련 모델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훈련 모델은 그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갖는다.
- <4> 모든 조정자는 위에 언급한 범주의 훈련을 받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장이 실제로 이뤄지기 위해 훈련 수료증이나 소속 단체 및 기관의 공증과정이 필요하다.
- <5> 훈련을 제공하는 트레이너와 조정자의 소속 단체 및 기관의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
 - 스스로 선택하지만, 훈련의 주요 목적은 조정자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 실질적 필요가 중요하지만, 너무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만 훈련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 장기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되, 트레이너의 책임은 훈련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끝난다.
 - 조정자를 고용하는 단체나 기관은 조정자 선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모니터링에 책임이 있고, 평소에 조정자의 수준향상과 훈련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 <6> 훈련은 계속적인 과정이다. 조정자는 연중 일정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조정자는 다른 훈련 모델의 훈련을 받도록 권장되어야

9)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Recommendations on the Training of Mediators in Criminal Matters." 2004. p.2-3

한다.

<7>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비록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정의 과정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합리적인 방법은 다양한 조정자와 트레이너로 구성된 훈련 팀이 꾸려지는 것이다.

<8> 위의 모든 권고는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와 트레이너, 다른 전문가에 의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증되고 추가되어야 한다.

3)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의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의 내용¹⁰⁾

● 개인능력

조정자는 개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에 열려있어야 하고 자신의 갈등을 다루는 성향에 대해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인적 성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조정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성장의 기회는 훈련과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자는 자신의 가치가 단점이 조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을지 열린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자 훈련과정 속에서 자신 개인의 성향과 가치를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독립적 사고와 가치를 지닌 개인이면서 동시에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수 있을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평가를 주고받는 것에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조정자를 위한 훈련은 특별히 개인의 선입관과 관점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관리 기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한 훈련의 한 가지 원칙은 조정자의 관점을 더욱 넓히는 훈련과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정도를 깊게 하는 것이다. 양질의 훈련을 기증하는 기준은 조정자가 조정참가자들에게 공감을 나타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개발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10)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Recommendations on the Training of Mediators in Criminal Matters." 2004. p.4

● 지식

모든 종류의 조정자 훈련은 갈등, 법, 심리, 사회적 과정 등의 주제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조정에 적용하기 위한 범위에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자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전반적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조정참가자에게 충분히 그 가치와 취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술

조정자가 기본적으로 배양해야 할 다섯 가지 기술은 중립성 유지, 객관성 확보, 조정자 역할 인식, 비밀보장, 자발적 참여 등이다. 이 다섯 가지는 조정이 재정과 같은 다른 분쟁해결의 형태와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다음은 조정자 훈련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기술훈련이다.

- 조정과정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역할
- 공감을 적절히 표현하기
- 조정과정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 행정실무 업무 처리하기
- 조정과정 중에 맞닥뜨리는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 다른 기관과 협력하기

● 조정자의 역할

모든 조정자 훈련 모델은 큰 틀에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다루야 한다. 조정자의 역할에서 크게 나뉘보면 아래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매우 감정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건을 다루는 조정자는 회복적이고 치유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 조정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 많은 나라에서 자원봉사자를 훈련하여 조정자로 양성한다. 이 방법이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확대해 가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록 자원봉사자를 훈련하더라도 전문 조정자 그

롭과 훈련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

● 행정적 고려사항

형사조정외의 행정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조정훈련 모델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 훈련기간

훈련기간은 외부 전문훈련기관에 의해 진행되느냐 아니면 내부 자체 교육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외부훈련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훈련은 훈련일정을 가지고 이뤄진다(예를 들어 3일 과정 등). 반면에 자체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경험 많은 조정자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지, 협력조정자와 함께 조정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등의 방법이 진행될 수 있다.

❖ 참가자 인원

참가자 인원은 트레이너 한명 당 최대 12명을 이상적 숫자로 권고한다. 조정훈련에서는 참가자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참가자의 숫자가 너무 적거나 많으면 이런 목적이 불가능해진다.

❖ 훈련방법

그룹 진행과정은 반드시 자기개발, 기술훈련,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그룹 내 상호작용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

❖ 필수교재

잘 정리되고 구성된 유인물이나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 훈련비용

훈련비용은 참가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지 상업적 목적으로 훈련이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훈련이 주어지는 상황은 기회의 형평성 면에서 피해야 하고, 가능한 형사조정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권고한다.

4)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의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 평가

유럽은 국가마다 형사조정 프로그램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 거기에 맞춰 발전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나라는 형사조정이 매우 학문적 분야에서 발전해왔고,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조정훈련이 이뤄지기

도 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경험이 많은 조정자에 의해 현장에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훈련이 이뤄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훈련관점의 차이는 결국 다른 스타일의 트레이너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된다. 유럽에서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을 탄생시키고 경험 많은 조정자들을 모아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를 함께 만들어낸 것은 이처럼 다양하게 이뤄지는 조정자 훈련 모델들이 상호 도움을 주고받고 좀 더 균형 잡힌 형사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나라들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EU의 탄생 등 정치사회적 영향 때문에 형사조정 훈련분야에서도 이런 통합적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조정과 이를 위한 조정자 훈련분야에서 나타난 이런 통합적 시도는 그 자체로도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EFRJ)의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의 제안은 여러 나라의 모델들을 통합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정훈련을 위한 세부적 내용도 많이 담고 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조정훈련의 프레임 형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조정자 훈련 내용 자체보다 조정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격(quality)을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사조정자 훈련을 위한 권고에 보면 회복적 사법 유럽포럼이 추구하는 이상적 훈련 모델에 대해 알 수 있는 적절한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경험이 있고 훌륭한 변호사나 판사는 법적 차원에서 이론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심리학 교수는 개인의 성향과 태도의 문제들에 이야기 할 수 있다. 테라피스트(therapist)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에 조언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조정의 깊은 이해나 경험에 기초하지 않고는 조정훈련의 충실한 근간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조정훈련 프로그램은 부분적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안에서 부분적 훈련 내용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어느 정도 심리 치료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심리요법은 아니다. 조정은 법과 사회과학의 여러 가지 지식을 요구하지만 조정자는 변호사나 총명한 과학자일 필요는 없다. 평상시 실천되는 조정실천을 통해 경험되고 쌓이는 통합적 접근 속에서 세부적 전문성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다.¹¹⁾

11)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p.8

라. 일본

1) 일본의 형사조정 훈련

일본에서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는 법학계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실질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사법체계와 더불어 정착한 것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한 때 2007~2008년 일본경찰청 소년과에서 시범적으로 사법적 회복 실천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행한 적이 있다. 소년대화회(少年對話會)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회복적 사법 프로젝트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경찰에 의해 주도된 프로젝트였다. 소년대화회의 주요 구성을 보면 대화회를 이끌어가는 진행자 역할을 경찰이 맡았고, 가해소년과 보호자, 피해소년과 보호자 등이 참석하였다.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기 이전에 소년대화회로 의뢰되었고 가해소년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에 의해 추천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¹²⁾ 경찰주도의 소년대화회가 시범 실시된 후로 실질적인 후속 사업(follow up)은 없는 상태이며 그 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사법기관과 연계하여 시도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 나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 지바현에 위치한 NPO 법인 피해자·가해자 대화회회 운영센터(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 이하 대화회)이다. 사실 일본 내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최초의 기관이자 유일한 기관이기도 한 대화회회는 민간단체로써 주로 변호사와 조정위원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조정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오고 있다.

대화회회에서는 사법부와의 연관 속에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기소 중이거나, 재판계류중인 사건 또는 양형이후 사건을 피해자(가족)나 가해자(가족) 또는 담당 변호사의 추천 등에 의해 센터로 의뢰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물론 사법기관도 센터의 존재를 알고 의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분쟁 당사자들에 의해 의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화회 결과는 법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위 시담(示談)이라고 하는 사법과정 가운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당사자 간 합의정도의 영향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54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그 중

12) 少年對話會 研究報告, 日本警察廳生活安全局少年課 警察廳丁少登第 229号, 2007.11.21

16건이 실제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총 54건을 의뢰주체별로 보면 피해자 측이 총 18회(대화모임 성립 10회)이고, 가해자 측이 총 36회(대화모임 성립 6회)에 이른다. 의뢰사건은 대부분이 소년사건이고, 범죄유형을 보면 상해가 가장 많고, 공갈, 절도, 금품갈취, 방화, 강제추행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횡수는 적지만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도치상 등 강력사건들도 다뤄 왔다. 사건을 의뢰하는 분쟁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행자들도 교통비 및 실비 외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 소속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¹³⁾

피해자-가해자 대화의회 운영센터는 대화모임의 진행자를 일반인 가운데 공모하여 면담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참가해오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진행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수회(역할극을 통한 훈련 등 포함)와 사례연구모임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복수로 대화모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훈련도 복수의 조정자 진행을 전제로 훈련한다.

2) 일본 피해자-가해자 대화의회 운영센터 진행자 연수 프로그램 목표

일본 지방지역의 NPO 법인 대화의회 운영센터(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 진행자 연수프로그램을 보면 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적 관심에서 지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입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 목표로 삼고 있다. 연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 30분씩 4일(총 10시간)동안 진행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수 후에 곧바로 대화모임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실무적인 내용과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화모임의 단계별로 진행자가 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역할극을 통해 실습으로 이뤄지고 있다.¹⁴⁾

13) 對話へのあゆみ,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 機関紙 No.3, 2009.4.1

14)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プログラム,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 p.1-4

3) 일본 피해자-가해자 대화의회 운영센터 진행자 연수 프로그램 내용

대화의회 운영센터 진행자 연수 프로그램의 일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뤄진다.

<첫날>

1:30-2:00 대화모임의 취지 확인과 연수과정 설명

2:00-2:30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당신이 강탈을 당한 피해자라면?”

2:30-3:00 [가해소년 입장에서 생각하기] “당신이 강탈을 한 소년이였다면?”

3:00-3:10 연습할 사건의 개요 설명

3:10-3:30 [가해소년에게 전화하기] 진행자로써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가해소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대화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권한다.

3:30-4:00 [가해소년과의 만남] 가해소년을 만나 ‘대화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

[질문과 나눔의 시간] 오늘 연수에 대한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1:30-1:40 연습할 사건의 개요 설명

1:40-2:00 [피해자에게 전화하기] 진행자로써 가해소년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서 ‘대화모임’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고 권한다.

2:00-2:30 [피해자와의 만남]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모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참가할 것을 권유한다.

2:30-3:30 [작은 대화모임] 진행자, 피해자, 가해자 3인 사이의 작은 대화모임을 연습한다. 대화모임의 시작 등 작은 형태의 대화모임 실습하기.

3:30-4:00 [질문과 나눔의 시간] 오늘 연수에 대한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셋째 날>

1:30-2:00 [복습] 첫 두 번의 연수내용에 대한 간단한 복습하기, 연습할 사건에 대한 개요 설명

2:00-2:10 역할극을 위한 역할 정하기

2:10-3:20 [대화모임 실습] 진행자(2명), 피해자, 가해자, 가족구성원 등 8-9명이 참가하는 실제와 같은 규모의 ‘대화모임’을 실습한다.

3:20-4:00 [질문과 나눔의 시간] 오늘 연수에 대한 질문과 나눔의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실습에 대해 총평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다.

〈넷째 날〉

1:30-2:30 [진행자의 역할] 대화모임 과정과 진행자의 역할에 대한 한층 깊이 배우는 대화의 모임 프로그램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2:30-3:00 [유의사항 배우기] 진행자가 진행자의 역할을 하면서 해서 좋은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배운다.

3:00-4:00 [세계의 대화모임]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대화모임 등 다양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¹⁵⁾

4) 일본 피해자-가해자 대화의회 운영센터 진행자 연수 프로그램 평가

일본 지바현의 피해자-가해자 대화의회 운영센터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간영역의 선구자로서 나름대로 활발히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것은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 대화의회 운영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회복적 사법에 대한 배경 이해나 철학에 대한 논의 등 이론적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4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에는 그 내용이 있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연구모임, 일본에 상당 수 출판되어 있는 회복적 사법관련 책자 등)으로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본다. 4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은 오히려 실무자로서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 진행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있다. 따라서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각 단계를 연습하고 트레이너들에게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대화모임 진행자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체계는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실제 사례들이 그 다지 많지 않은 것은 진행자들의 수준향상을 저해하고 관심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지난 9년 동안 54건이

15) ボラティア進行役4日間研修プログラム、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営センター

의뢰되었고 실제로 대화모임까지 간 경우는 16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 년에 평균 채 2건이 안 되는 대화모임이 열린 것을 보면 실제사건을 경험하는 진행자의 수가 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수 프로그램 후에 사례연구 및 역할극을 통해 계속적으로 조정자의 조정능력을 유지 및 향상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마.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일본의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의 조정자 및 진행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각기 그 나라의 회복적 사법의 발달 및 적용 역사와 형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회복적 사법이 국가적 지원 속에서 이뤄지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차이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요소가 발견된다.

첫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형사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자 및 진행자는 반드시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훈련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경험 있는 조정자 및 진행자가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돕는 것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정의 훈련과정을 마쳤을 경우 일종의 인증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히 민간영역의 참여가 권장되고 이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회복적 사법의 원칙에서 볼 때 조정자 및 진행자의 질적 수준의 향상은 필수요소임과 동시에 지속적인 도전이다. 이런 면에서 지방법원이 훈련비용을 마련하여 민간 회복적 사법 단체들을 훈련시키고, 일종의 조정자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뉴질랜드 훈련 모델은 바람직한 모델이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형사조정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현은 비록 달리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조정자 및 진행자에게 세 가지 측면, 즉 지식(knowledge), 태도(attitude), 기술(skill)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은 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배경 및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형사조정이 현 사법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태도는 범죄행위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갈등 속에서 상처 입은 참가자들을 대하는 자세

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선입관 없이 의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객관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인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형사조정을 이끄는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운영의 전문성과 대화의 기술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형사조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문제해결과 분쟁종결이 아니다. 모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이 그러하듯이 형사조정의 더 높은 목표는 범죄로 인해 깨어진 신뢰 및 관계 회복이다. 그리고 이 높은 가치의 회복과 화해는 형사조정을 이끄는 조정자 및 진행자가 좀 더 인본주의적 조정을 시도할 때 좀 더 가능해진다. 참가자의 분노를 조절하고 이슈를 해결하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을 안내 속에 밟아가는 조정자와 진행자는 이미 그 존재로써 새로운 관계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의 형사조정제도가 비록 짧은 기간 안에 확대되어 왔지만 본래의 회복적 사법의 가치를 구현하고 진정한 새로운 대안적 제도로 확대되려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조정자와 진행자가 분쟁의 봉합보다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회갈등속의 피스 에이전트(Peacebuilding Agent)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조정은 그냥 단순한 분쟁해결의 과정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과정이자 공간이다. 따라서 조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관계의 차원을 창조하는 예술(Art)이 될 수 있음을 조정자와 진행자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 탐색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국내의 문헌을 바탕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았다.

먼저, The Scottish 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2008)는 회복적 사법을 위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에게 요구되는 기술로 ①환경조성 및 경청 능력(active listening), ②공정성(impartiality), ③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④갈

등관리능력(conflict management), ⑤감정이입능력(empathy), ⑥명료성과 유익성(clear and informative), ⑦신뢰성(trustworthiness), ⑧전문성(professionalism), ⑨유연성(flexibility) 등 9가지를 제시하였다.

뉴질랜드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in New Zealand, 2003)의 조정실무가 훈련매뉴얼에는 회복적 사법 조정실무가가 갖추어야 할 기술로 ①기초 의사소통기술(basic communication skills), ②안전한 환경조성 기술(establishing a safe environment), ③교급, 민족, 성별 등의 다양성 관리기술(managing diversity in terms of class, ethnicity and gender), ④감정관리 기술(managing strong emotion), ⑤갈등관리기술(managing conflict), ⑥협력자와의 관계관리기술(managing a co-facilitation relationship), ⑦ 보고서 작성 기술(reporting writing) 등 7가지를 제시하였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가 2006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조정자의 기술로 ①정보수집 및 분석 기술, ②의사소통 기술, ③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④대안탐색 기술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수집 및 분석기술은 갈등사안과 관련된 핵심단어, 수치, 주요 당사자·주변 당사자·잠재 당사자 등의 관련 당사자들, 지리적 위치 및 주요 생업수단 등 당사자들이 처한 조건,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정자 회의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기술은 적극적 듣기,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 몸의 움직임·감정의 변화 등에 대해 관찰하기, 요약하기,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등이 해당된다.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은 감정이나 분노다루기, 편견다루기 등이 포함된다. 대안탐색기술은 브레인스토밍 기술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조정실무가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지만, 최창욱·권일남(2004)과 최창욱·김정주·조영희(2005)는 갈등해결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갈등해결프로그램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국내외 사례분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갈등해결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갈등해결프로그램의 하위 구성요소를 ①갈등이해 프로그램, ②자기존중 프로그램, ③인간관계 프로그램, ④의사소통 프로그램, ⑤문제해결 프로그램, ⑥의사결정 프로그램 등 6가지로 나누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7]과 같다.

〈표 2-7〉 갈등해결프로그램 구성요소와 주요 내용

갈등해결프로그램 구성요소	영역별 주요 내용
1. 갈등이해 영역	갈등본질이해, 갈등원인이해, 갈등해결유형이해
2. 자기존중 영역	자신 이해와 존중, 인간 권리와 의무 이해
3. 인간관계 영역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와 다양성 이해 등
4. 의사소통 영역	표현력, 경청 등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
5. 문제해결 영역	협동 문제해결 능력과 기술
6. 의사결정 영역	판단력, 진로목표 설정 능력, 진로계획 설정 능력

회복적 사법 조정실무가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일리노이 주 갈등해결연구소(Illinoi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 IIDR)는 갈등해결 중재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갈등해결 중재자 교육은 총 6가지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8]과 같다(Crawford & Bodine, 1996).

〈표 2-8〉 일리노이 갈등해결연구소의 중재자 교육 6단계

단계	주요 프로그램 내용
I 단계: 팀과 위원회 구성 개발	프로그램 팀 구성 프로그램 팀 훈련 프로그램 조정자 선정 평가에 필요한 안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합의
II 단계: 구성과 프로그램 계획	완성을 위한 스케줄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정책과 사업 개발 소스의 개발과 확인
III 단계: 선택과 중재 훈련	오리엔테이션 동료 중에 중재인 선택 중재인 훈련 또래 중재인 인식과정
IV 단계: 비판의식 있는 집단 육성	연수훈련, 워크숍 지도 가족과 지역 오리엔테이션
V 단계: 증진캠페인 개발과 시행	초기 캠페인 시행 계속적인 캠페인 증진을 위한 개발
VI 단계: 프로그램 운영과 유지	조정과정 요청 중재스케줄과 중재인 중재 회의 지위 중재인 연수훈련과 지원 공급 평가 프로그램

※ 자료: Crawford & Bodine(1996).

5.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이상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의를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다음 [표 2-9]와 같이 추출하였다. 기본적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은 ①회복적 사법의 이해, ②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③조정과정 훈련, ④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⑤ 조정실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해 부분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 회복적 사법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사법의 새로운 변화에서는 사법제도의 새로운 변화인 회복적 사법의 등장과 개념, 회복적 사법과 응보적 사법의 비교, 회복적 사법의 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회복적 사법은 회복의 근원적인 의미로써 무엇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피해자와 가해자, 사회의 요구, 처벌에서 회복에 이르는 방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회복적 사법의 실천 영역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프로그램, 피해자-가해자 가족협의회, 진실과 화해 위원회 등이 주요 내용이다. 회복적 사법의 평가에 있어서는 회복적 사법의 정착을 위한 노력, 회복적 사법의 한계, 과거에서 미래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에서는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의 이해, 형사화해 조정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과정 훈련에서는 갈등해결의 개념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과정과 절차, 조정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갈등해결의 이해에서는 갈등의 개념과 특성, 갈등원인과 해결방법, 평화적 갈등해결의 방법이, 조정이해에서는 조정의 개념,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조정의 특성, 조정의 원칙이, 조정과정과 절차에서는 사전준비, 도입, 이야기하기, 나누기, 쟁점규명, 대안모색, 합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에서는 조정자의 자세, 조정자의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정자의 기술에서는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대안탐색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 실무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해당된다.

〈표 2-9〉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영역별 주요 내용
1 회복적 사법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복적 사법이란? 2) 회복적 사법 vs 응보적 사법 3) 회복적 사법의 뿌리 2.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2)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요구 3) 처벌에서 회복으로 3. 회복적 사법의 실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 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 2) 피해자 가해자 가족 협의회 3) 진실과 화해 위원회 4. 회복적 사법의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착을 위한 노력 2) 회복적 사법의 한계 3) 과거에서 미래로
2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 이해 2. 형사화해 조정 절차
3 조정과정 훈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해결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갈등의 개념과 특성 2) 갈등 원인과 해결방법 3) 평화적 갈등해결의 방법 2. 조정에 대한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이란? 2)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3) 조정의 특성 4) 조정의 원칙 3. 조정 과정과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 준비 2) 조정 과정과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이야기하기 나누기/쟁점규명/대안 모색/합의 4. 조정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 사례 실습
4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정자의 자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 2)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 : 양쪽 당사자 존중하기 3) 다양한 감정을 읽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4) 진행규칙을 집행하는 단호함 2. 조정자의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수집 및 분석 2) 의사소통 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적극적 듣기 태도 ②조정자가 삼가야 할 적극적 듣기 (2)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3) 당사자들의 신체적 움직임, 감정의 변화 등에 대해 관찰하기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영역별 주요 내용
	(4) 요약하기 (5) 효과적 질문하기 3)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1) 감정, 분노 다루기 (2) 편견 다루기 4) 대안탐색 기술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5 조정실무	1. 행정절차의 이해 2.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3. 보고서 작성 요령

제3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정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과정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단 계	내 용
1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프로그램개발팀(PDT : Program Development Team) 구성·운영
↓	
2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확정
↓	
3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선정
↓	
4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설계(목적 및 목표 진술, 내용 구체화, 운영방법설계 등)
↓	
5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 개발
↓	
6 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 시범적용 - 단기 프로그램
↓	
7 단계	● 수정·보완 및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최종 완성

〈그림 3-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

가. 1단계 :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 구성·운영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가장 첫 단계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PDT: Program Development Team)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은 연구진 4인, 형사화해 조정 및 중재전문가 3인,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진과 형사화해 조정 전문가들이 형사화해 조정 관련 주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고,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들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문하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2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 확정

기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구성요소들은 프로그램개발팀 회의를 통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다. 3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내용선정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 회의를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따른 영역별 주요 내용을 선정하였다.

라. 4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설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별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목적·목표 설정, 프로그램 내용의 구체화, 프로그램 운영방법의 설계 등 프로그램 설계를 실시하였다.

마. 5단계: 청소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 개발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단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조정실무가(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하였다.

바. 6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현장적용

개발된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현장적용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참가자는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실무자와 조정위원 등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였으며, 30명의 조정실무가와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현장적용을 실시하였다.

현장 적용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참고자료, 필요한 워크시트 등을 추가로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개발팀 회의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시범적용은 2009년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한국교총 2층 단재홀에서 개최하였다.

사. 7단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완료

이상의 과정을 토대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을 완료하였다.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가.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해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1) 회복적 사법이란?

“사법제도 안에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밑으로부터 조용히 그러나 이 혁명운동은 우리 일의 가장 근본적 구조부터 바꾸어놓고 있다.”

이 말은 미국교정협회(National Institute of Corrections)가 발간한 보고서 서문 중에 일부이다. 미국교정협회의 전문운영위원 중 한 명이었던 바라자스(Eduardo Barajas,

Jr.)는 회복적 사법의 대두를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개혁의 역사의 틀을 넘어서는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사법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혁신의 개념을 넘어서진 진정한 발명이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복적 사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사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개인의 단계이든 사회의 단계이든 바로 정의(正義)이다. 진정한 정의는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느낄 때 더욱 그 의미가 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전통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이해와 철학으로부터 출발한다. 현재 사법제도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사법은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응당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응보적 관점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구형한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 피해와 관계에 훼손을 가져왔고, 따라서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와 피해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룰(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회복적 사법은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이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주변사람들, 더 나아가 지역사회 등 어떤 범죄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로 참여하여 함께 해결한다는 뜻이다. 단순한 참관이나 참석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올바르게 정정하는 책임을 경험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회복적 사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초점이 법을 어긴 행위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찾는 데 있지 않다.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는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다. 사회가 범죄 행위와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을 쏟는 사이 범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제3자인 법률전문가에 의해 매우 전문적인 용어와 과정 속에서 단지 참여자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결국 사법기관이 내린 결론이 본인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

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의 필요와 그를 회피하려는 피의자의 이해가 법적 공방의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를 어떻게 채울까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묻되 관계의 회복과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목적을 추구한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 사법제도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안된 단순한 보안 프로그램이 아니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 무엇을 초점에 두고, 누가 이뤄갈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사법과정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Zehr, 1990).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그 기능적 효율성으로만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기본 철학인 분쟁의 당사자들과 사회의 ‘전인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회복적 사법정의의 주요 특징〉

-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초점이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에 있다(Crime=Relationship Breaking).
-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 양측 간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하고 처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 기존 재판제도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민간 자원 봉사자들이 소정의 훈련을 받아 사건의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2) 응보적 사법 vs 회복적 사법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해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을 사법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잘못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는 응보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정의이다. 그렇지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면 당사자가 원하던 그렇지 않던 주어지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회복적 개념에 기초한 정의이다. 이 두 개념 사이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점과 실천이 나타나며, 어느 한 쪽이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결과적 차이를 보인다는 면에서 상호보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도표는 응보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사법과 회복적 정의 개념에 기초한 사법의 두 관점의 차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3-1〉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 비교

응보적 사법	비교	회복적 사법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점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주의 차이를 강조 피해를 가해자에 대한 피해로 균형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손해배상 결여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잘못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독점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개인적 감정은 부차적 요소 가해자 자체에 대한 비난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가해자를 단편적으로 인식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핵심사항이 아님 절차가 개별적, 분리 조장 반성과 용서가 권장되지 않음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해결 공통분모의 탐색 배상과 원상회복을 통한 균형의식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 갚아짐 피해자 요구 중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일반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슬픔 등 감정 표현 및 인식 권장 피해행위에 대한 비난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가해자를 전체적 맥락에서 인식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중심 절차의 목적은 화해 반성과 용서 장려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 자료 : Zehr(1990).

(3) 회복적 사법의 뿌리

회복적 사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동체 정의(Community Justice)와 성서적 정의(Biblical Justice)는 가장 큰 배경이 되는 두 축이다.

사실 현재 널리 보편화 되어 있는 형사사법제도가 인류 역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은 불과 몇 세기에 불과하다. 이전의 분쟁해결 수단은 매우 개인적 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집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 개인적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사법도 실제로는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전통적 방법을 따라 일정한 규칙과 과정을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개인 간 직접적이고 이반적인 형태의 복수는 자제되었고 공동체의 리더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죄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아픔이고 문제로 인식되었다. 결국 전통적 공동체에서 정의를 찾아가던 방법은 구성원 가운데 소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격리함으로써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만들어 낸 해결해야 될 필요에 맞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처벌이란 영어 단어 punishment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punē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돈을 교환 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죄를 뜻하는 guilt도 Anglo-Saxon의 geldan이란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지불(payment)이다(Mohr, 1981).

공동체적 사법은 처벌가진 사보다는 구성원의 회복과 공동체의 치유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처럼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찾는 곳이 늘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나온 Family Group Conference나 북미의 원주민 전통에서 나온 Sentencing Circle과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축인 성서적 정의는 비록 응보적 사법이 강화되는데 많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매우 회복적이다. 서구에서 발달한 사법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록 그 문화와 환경이 다르지만 현대 사법제도가 낳은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문제점을 풀어 가는데 있어 좀 더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법의식을 고려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구 사법의 기초가 되는 구약의 율법과 언약법은 마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그 본질적 의미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이 인간과 사이에서 만들어 지키도록 한 계약의 목적은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인간들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장치가 아니라, 신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살롬의 원칙이 회복되는 것이었다. 살롬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기도 했다. 따라서 예수는 기존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하며, 법에 얽매어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려 하였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흐르는 살롬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인간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성서에 나타난 신의 처벌적 장면들만 기억하고 중세 신의 대리인으로 자칭했던 왕들이 중앙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시킨 국가주도의 형사사법 제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면 기독교의 본질적 사랑과 화해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성서적 정의에 기초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초기 복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처럼 서구 사법의 발전과정에서 도태하기 시작한 공동체 정의와 성서적 사법의 특성이 결국 국가 주도적이고 권위적인 현 서구 사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생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회복적 사법의 발전에 이 두 가지 배경(공동체 정의와 성서적 정의)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어쩌면 잃었던 사법의 전통적 배경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회복적 사법이 강조하는 지역은 참여를 통한 범죄의 개인화적 이해가 아닌 상황(context)과 배경(background)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통합적 접근의 근간은 바로 공동체 정의에 그 기초가 있다. 또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살롬의 회복을 구현하는 성서적 정의의 의미가 회복적 사법의 방향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1)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두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일반적

으로 사회가 사법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로운 해결(수사와 재판)이다. 이러한 과정과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손실)와 고통에 대한 대응으로써 우리는 그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또 다른 피해나 고통을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과되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부른다. 처벌을 통한 균형은 어찌면 범죄에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정적 방식으로 잘못된 행위에 맞대응하는 방식은 그 의도와는 다르게 또 다른 사회적 재판을 양산해왔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식 재판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의문과 만족은 소외되고 사법기관(국가)과 가해자 사이에서 죄와 처벌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 진행된다는 점이다. 결국, 처벌을 중시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만족이나 화해, 정신적 치유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서 법원에 다녀와서 화해했다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지, 무슨 화해나 치료가 필요한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나 재범률 증가 등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삼진아웃제도 등)이 있는 사회일수록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처럼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와 사회라는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는 매우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송의 남발과 소송기간의 증대 등으로 사법이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한 조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 없는 현실적 문제를 양산해왔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법률전문가 주도의 문제해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의 문제도 무시 할 수 없다. 결국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대리 소송이 남발되는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수감시설의 문제점은 또 어떠한가? 교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감시설에서 그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목적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난다. 즉 수감자간의 인적 네트워크가 생겨나고 사회로부터 낙인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되기 쉽다. 더 나아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멀어지면서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생겨나면서 전과자의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라

는 또 다른 장애요소를 낳는다.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다시 범죄의 그늘을 맴도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국가예산의 사용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현재의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범죄는 국가가 지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Crime = Law Breaking).
- 누가 범인이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 범죄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기 쉽다.
-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즉,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달게 된다.
- 처벌의 근본적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처벌이 이뤄진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 피해자는 법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

(2)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요구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당사자의 요구(needs)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떠한 범죄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벌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는 사법제도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회복적 사법에서 중시 여기는 요구(needs)는 비단 그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범죄로 영향을 받는 주변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넓게는 사회전체를 포함한다. 범죄로 인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을 가져오고, 안전에 대한 필요를 넓힌다. 안전은 인간이 누구나 갖는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표 3-2〉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

피해자의 요구	가해자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로 인해 초래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고 사과를 받고 싶다. ▪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고통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다. ▪ 가해자의 동기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싶다. ▪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고 싶다. ▪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 ▪ 가해자가 뉘우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 가능한 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피해자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싶다. ▪ 할 수 있으면 직접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 ▪ 사람들이 비난 보다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제2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싶지 않다. ▪ 공개적이지 않을 지라도 주변의 도움과 신뢰를 받고 싶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싶다.

지역사회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면 그 해결의 주체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 개인의 행위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가 범죄자 자체를 비난만 하고 격리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렇듯 가해자, 피해자, 사회의 다양한 정신적, 감정적, 물질적 요구를 현 사법제도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며 앞으로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권장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자신의 잘못을 최대한 부인하고 부정함으로써 처벌을 덜 받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받는 것이 억울하게 느끼게 만드는 제도는 결코 균형 잡힌 정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사법이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가해자, 지역공동체의 요구를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요구는 책임을 낳지만 처벌이 반드시 요구를 채운다는 전제는 많은 모순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3) 처벌에서 회복으로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회복(restoration)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회복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원상으로 복구하고 변상한다는 뜻에서

변상(reparation)이란 의미와 손해배상(restitution)의 의미가 있다. 이는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회복적 사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다. 흔히 처벌을 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과 그 피해의 영향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간혹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행위나 피해자의 피해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상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 관심이 쏠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원래 처벌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초래한다.

둘째, 회복이란 의미에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관계적(relational)이란 뜻이 있다. 범죄를 법을 깨뜨린 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관계의 회복으로 본다. 어떤 문제를 표면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분쟁봉합(dispute settlement)이라고 본다면 제 삼자인 법적 대리인들을 통해 대신 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당사자 간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화해와 치유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관계회복을 향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그 의미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회복의 의미에는 인류의 오랜 전통 속에 남아 있는 공동체성(communitism)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산업화 이후 점점 심해지고 있는 도시화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과의 관계성이 결여되는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게 만들었다. 현대 사회의 범죄문제는 이 개인화 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회복적 사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를 극히 개인적 선택의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범죄행위 이면에 깔려 있는 근본적 문제까지 다뤄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전통적 공동체에는 그 나름대로 범죄문제를 다루는 메커니즘이 발전해 있었고, 그 모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과거 공동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그러한 전통으로부터 현대 사법이 배워야 할 주요한 요소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지역사회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요구-공동체의 안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주체로써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직접 피해자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이며,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불필요한 불신을 없애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로 변모하게 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회복은 이처럼 매우 다양한 차원의 변화를 요구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해 오면서 처벌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이 형성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처벌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한 진정한 반성과 옳게 고치는 것이라면, 응보적 접근보다는 좀 더 회복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개선의 여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조하면 제삼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기 쉽지만, 회복을 강조하면 당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제는 처벌 자체보다는 처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다시 되짚어 볼 시기이다.

3) 회복적 사법의 실천

(1)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

(Victim-Offender Mediation/Reconciliation Program, VOMP/VORP)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형사사법에서도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회복적 패러다임을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훗날 북미의 첫 번째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엘미라 사건은 이 후 수많은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VOMP/VORP)로 발전하게 된다.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미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털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심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 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안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심대 용의자들을 데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을 담당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 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게 최종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탄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 둘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다시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재인용)

이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심리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법적 처벌보다 더 효과적인 선도와 예방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일반적 사법절차가 아닌 직접 대면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한 모델이 피해자-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이다. 피해자-가해자 조정 프로그램(VOMP)은 훈련받은 조정자가 참가하여 당사자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회복적 사법 실천 프로그램이다. 사건의 의뢰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 교정단계 등 다양하게 다는질 수 있으며 경미한 사건의 경우 순수 민간 분쟁해결센터 등에서 경찰책을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은 법적 절차가 모두 종결된 이후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회복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몇 가지 기본적 성립원칙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모두가 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자발적인 동의와 필요에 의해 참가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따라서 조정자(mediator)는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과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운영의 묘를 살려 법적 조언이나 약간의 어드바이스는 가능할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는 당사자이고 직접 원하는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하지, 조정

자의 강요나 유도로 합의문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직접 대면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없으며, 차후에 법적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기회를 갖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를 위한 모임과 참가동의 절차, 중립적으로 당사자의 요구를 잘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기술과 절차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훈련받은 전문 조정자의 자질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2) 피해자-가해자 가족회합 (Family Group Conference)

소년법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직접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가장 잘 실천된 곳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에서는 1989년 청소년과 그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그 가족구성원들이 최대한 모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회합(Family Group Conference)이 고안되면서 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안된 가족회합 모델에서는 19세 이하 소년범들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교정시설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가족회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족회합의 핵심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나누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가족회합의 진행은 전문조정 훈련을 받은 담당 사회사업가가 진행을 하며 경찰 소년지원과의 직원이 참석한다. 또한 지역의 영적지도자나 어른이 함께 참석하여 공동체의 문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 가족회합을 통해 만들어진 양측의 합의는 법원에 의해 최종 추인을 받게 되고 그 실행여부가 의뢰기관 등에 의해 모니터링 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가족회합(FGC)은 형사사법제도 안에 회복적 사법의 정신이 구현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재범률을 낮추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고 있다.

지역의 리더와 가족 구성원의 최대한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의 가족회합은 회복적 사범을 가장 이상적 절차로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가자가 많은 만큼 지역 마을회관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열리기도 하며, 때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에서 이뤄지기도 한다. 가족회합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조정자(또는 진행자)가 미리 양측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다. 양 측의 만나고 목적과 진행절차,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법적 조언 등을 통해 준비된 회합이 이뤄질 때 생산적인 결과와 화해와 치유의 의미 있는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회합을 통해 도출된 합의문은 많은 경우 가족 구성원간의 자체적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대화로만 이뤄지는 경우보다 더욱 집단적 책임을 갖게 되기 쉽고, 그만큼 연대적 의미와 공동체적 회복의 의미가 커진다. 범죄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마오리 전통이 잘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3) 진실과 화해 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회복적 사범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갈등 해결의 적용한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랜 인종차별정책 폐지 후 생긴 많은 인종간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이끄는 African National Congress(ANC)에 의해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회가 설립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ANC는 전정권의 인종차별정책과정에서 국가차원에서 자행되었던 범죄행위와 인권유린행위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사회통합을 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고안하게 된 것이다.

데스몬드 투투(Desmond Tutu) 대주교의 진행으로 2년 동안 계속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는 누구나 위원회의 청문회(hearing committee)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졌고, 국가차원에서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또한 비밀경찰 등 가해자 측은 인종차별정책 수행을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진실을 이야기 하고 혐의의 경중에 따라 최대한의 용서와 사면을 신청했다. 방송 등에 공개된 증언 외에 2만 명 이상의 증언과 사실시인이 이뤄졌다. 총 2만 5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고, 사실을 증언한 7천여 명의 가해자 중 약 20%가 사면을 받았다(Wilson, 2001).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너무 짧은 기간에 30년이 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인권유린과

국가폭력을 해결하려 하면서 많은 미결의 과제와 한계를 남기고 끝이 났지만, 국가 전체 차원의 비극적 보복의 악순환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청산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말처럼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유사 프로젝트가 생겨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4) 회복적 사법의 평가

(1) 정착을 위한 노력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의 실험은 나름대로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 유엔의 형사사법개혁부서(Criminal Justice Reform Unit)에서도 2006년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핸드북¹⁶⁾을 만들어 회원국에게 형사사건을 다룸에 있어 회복적 사법 원칙을 적용하고 이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인디애나 엘카아트(Elkhart)에서 처음 시작된 미국의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VORP)도 이제는 미전역에서 50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 이후로 회복적 사법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 세계 많은 나라들의 RJ(회복적 사법) 연구가 확대되어 수많은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2006년 이후로 회복적 사법 정신을 담은 제도적 장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년법 개정과 맞물려 새로 입법 시행되기 시작한 화해권고 규정이라든지 형사조정제도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작은 부분이지만 기존의 범죄규정과 처벌위주의 재판제 도에서 벗어나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사회의 형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가 피해자의 높은 만족도는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면이며, 화해와 치유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회복적 사법 관련 논의들과 제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6)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2006
Online version 참고

이제 유죄증명과 처벌위주의 현 사법제도는 서서히 변화의 요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현 사법제도 안에서 더욱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다. 동시에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좀 더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분쟁의 문제를 풀어보려는 법조인과 조정위원, 연구원들의 갈망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좀 더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인프라의 구성이다. 제도적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낼 다른 관점과 전문 조정 훈련된 조정자와 진행자가 양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법률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은 응보적 사법에 회복적 사법의 껍데기를 씌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할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이나 양성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 교육만으로 새로운 이해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오산이다. 새로운 관점과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회복적 사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가 늘어가고 그 정신을 구현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회복적 사법이 직면하고 있는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범죄와 형벌에 대해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회복적 사법에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대면을 통한 협의의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어떤 객관성도 결여되는 가운데 사건마다 주관적 결정에 의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차적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법의 안정성을 매우 중시하는 현 사법제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 온정주의에 입각한 결과

처벌보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은 결국 피

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응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깊이 반성하고 널리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당사자 간 직접 협의는 가해자에게 너무 ‘약한 처벌(soft punishment)’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 지역공동체의 부재

회복적 사법의 다른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적 사법인데, 실제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지, 어디까지를 공동체로 보고 그 참여와 책임을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지역 공동체의 형성은 오히려 사법의 변화보다 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제된 회복적 사법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민간 조정자들의 형식적 참여만으로 지역 공동체의 참여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지역 공동체 참여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 강제성의 결여

회복적 사법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위한 매우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의지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결여된 완전한 자발성으로만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강제적 요소가 포함되는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인 당사자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쌍방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 실행여부를 강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형평성 문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회복적 사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에서 나온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해 줌으로써 좀 더 유리한 협의에 이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직접적 대면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태도로 비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오히려 기존의 사법제도가 양산하는

처벌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물론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은 기존 사법제도의 이해의 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면도 분명 있다. 하지만 회복적 사법이 실질적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다. 특히, 조정자와 진행자처럼 회복적 사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민감하게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전문 인력(조정자나 프로그램 진행요원 등)의 양성이 필수적이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많은 민간단체의 역할이 필요한 회복적 사법의 구조를 정부와 제도권이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다.

(3) 과거에서 미래로

원래 한민족은 유교의 영향으로 인한 법에 의존하여 풀지 않으려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만약 백성을 형(刑)으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단지 형(刑)을 피하려고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덕(德)과 예(禮)로써 다스리면 백성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 스스로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구절이 말해주듯이 군자(君子)는 법보다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의 가르침은 모든 통치자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도 상대와 직접적 대면을 통해 문제를 푸는 방법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팽배했었다. 그 결과 일반 대중들도 낯선 남들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형태의 문제해결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나 주변어른의 중재를 따르는 해결방법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해결보다 관계를 통해 풀려고 하는 경향은 근대화와 해방이후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준법정신의 고취를 위한 정부차원의 교육은 국민들의 법의식 구조를 바꾸어 놓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과 산업화, 도시화로 이어지는 사회경제변화는 공동체의 변화 내지는 붕괴를 가져왔고,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법의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의 전환이 일반화되었다. 지금은 대화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정치권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서 명예훼손이니 재산권이니 하면서 걸핏하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과대의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고유 전통 속에는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을 비롯하여 제도보다는 인간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상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향약의 규범(과실상규, 환난상휼 등)과 계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신문고제도 등,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 왔다.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의(公義)를 의미한다. 일방만이 만족하는 정의는 성립될 수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수긍할 수 있고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정의, 또한 사회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의가 이뤄져야 한다.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잘못된 사람을 격리하므로 이뤄지는 편협적인 안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최대한 올바르게 바로잡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의미의 정의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회복적 사법은 현재도가 생산하는 정의와 그 근본부터 차이를 갖는다.

이것은 범죄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실질적이고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죄를 국가가 제정한 법의 위반행위로만 보기보다는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사회)에 가해진 피해행위로 간주하여, 상호간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를 정의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회는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은 국민의 직접 정치참여 기회증가 등 요즘 형성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아직 성역화 되어있는 사법제도에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법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Crime)와 정의(Justice)의 개념부터 다시 정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회복적 사법은 제도의 전환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한 사회에게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도전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나. 조정실무 훈련

1) 갈등해결과 조정

개인이나 집단 사이, 사회, 국가 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주요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첫 번째 방식은 ‘힘에 의존한 방식’인데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누구의 힘이 더 센지, 힘겨루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식은 ‘권리에 의존한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들 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며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소송이 대표적 예이다. 세 번째 방식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방식, 즉 실익에 의존한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가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즉 갈등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자율성, 3자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크게 협상, 조정, 중재가 있다.

협상(negotiation)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직접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며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조정과 중재는 양 당사자가 제3자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 대화의 결과 즉 합의가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은 조정(mediation), 갈등해결의 내용에 제3자의 판단, 결정이 부과되는 과정은 중재(arbitration)라 한다. 조정은 제3자가 과정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 과정과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만족도가 높고, 결과에 대한 수용성도 높다.

갈등 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갈등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편익은 매우 큰 차이가 난다. 실증주의자들은 힘이나 권리에 의존하는 갈등해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실익의 만족에 집중하는 협상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가 유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갈등이 실익, 즉 대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현실에서는 갈등 당사자 중 일방이 실익에 기초한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라도 상대가 전혀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실익에 기초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권리나 힘에 의존한 방식을 사전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개별 사례에서의 갈등해결도 중요하지만 큰 정책의 방향 또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경우 등 법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실익에 기반을 둔 대화 방식이 갈등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국가 차원의 갈등해결 노력을 정리해보면 갈등당사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갈등해결방식의 사용을 점차 자제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갈등해결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기존의 갈등해소 및 관리 방식이 힘이나 권리에 의존한 방식이 아닌 실익에 기초한 방식들이 갈등의 초기 단계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방식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조직, 관리 방식에서는 기존의 갈등해결방식에서 유발되는 결과보다 더 적은 거래비용으로, 즉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갈등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하여 훨씬 더 만족하며, 당사자 간 관계가 좋아지고, 같은 종류의 갈등이 덜 발생되며 합의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영, 2008).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져 형사법상의 피해·가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실익에 기초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민사사건의 형사 분쟁화 등 소송으로 치닫는 각종 분쟁을 민간의 사적자치 영역에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전반적인 분쟁해결능력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형사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형사조정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한다. 현재 검찰의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에 의하면 형사조정은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 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형사사건 처리시스템은 경찰이나 검찰의 인지, 고소인 등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보완수사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 유무 결정에 따라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국가기관 외에 사건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개입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국가기관이 형사사법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사건처리에 조정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국가주도의 일원화된 사법 체계가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이다.

형사조정은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절차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사건 당사자가 화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 그러한 조정 결과가 사건 처리에 반영된다는 점이 기존의 형사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2) 조정의 원칙과 특성

(1) 조정(Mediation)이란?

조정은 갈등분쟁 상황에서 제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것을 말한다. 영어에서 조정을 뜻하는 mediation의 'med'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것으로 mediation은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즉 조정이란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것이며,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이 만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고조되면 대화가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부정확해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갈등해결 과정에서 제3자가 필요하다. 조정은 갈등 분쟁 상황에서 중립적 제3자인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 과정만 통제하고 문제에 대한 결론은 당사자가 내리도록 돕는다. 따라서 비록 제3자가 조정 과정을 안내하고 진행하지만, 당사자들이 직접 결론을 내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정자가 과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갈등 당사자들이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하고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규칙을 집행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조정자가 조정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조정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 지키기로 한 자율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한 약속이며 자율적 결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것은 당사자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지가 있고 조정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어

야 한다. 조정은 조정에 참여하기 전 그리고 조정이 시작되기 전 공개적 동의를 통해 당사자들의 문제해결의지를 확인하고 높이는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조정자가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조정자가 공정하게 조정 과정을 운영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은 갈등 당사자인 자신들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2) 조정의 특성

① 조정은 중립적 제3자가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돕는 과정이다.

조정은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중립적 제3자가 이끄는 과정이다.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결정이 전제된 것으로 그 과정을 이끄는 조정자의 중립성은 조정의 성립과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조정자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당사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조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조정자 혹은 조정기관의 중립성은 갈등 당사자가 문제해결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데 중요한 요소다. 형사조정은 특히 피해·가해가 전제된 사건을 조정하게 되므로 조정자가 중립적 제3자가 아니라 피해나 가해 당사자에게 편견을 갖고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조정이 성립되지도 않고 문제해결은 당연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립성은 원론적이거나 이상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바로 검증되는 원칙이다.

현재 형사조정외 의뢰절차에서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찾아볼 수 있는데,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형사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에 있어 성심을 다하여 공정하게 형사조정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형사조정자의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에 관한 핵심적 의무이다. 또한 “담당위원이 형사조정 대상자 중 일방 당사자와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가 있어서 형사해조정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척되거나 회피할 수 있고, 형사조정 대상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조정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수사 착수하기 전에 조정에 의뢰하려면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사조정에 의뢰되면 피고소인은 정식 수사절차에서 일단 제외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은 그에 따른 절차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역시 조정절차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또는 피해자와 피의자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

나하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등 형사법적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양 당사자의 각각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일방에게만 유리하지 않도록 동의를 받는 것에서부터 중립적인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② 조정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과정이다.

조정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주체는 갈등 당사자이고 결정권도 당사자에게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해결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지만 형사조정과정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당사자 스스로 제안하고 합의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자체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기존의 사법절차와 다른 점이다.

자발성과 자율성은 조정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에서부터 시작한다. 조정이 성립되려면 우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 스스로가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 조정자 또는 제3자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할 수 있겠지만, 그 조정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결정권은 갈등 당사자가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과 생각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 해결책을 당사자들 스스로 함께 찾아내고 함께 결정한다. 자발성,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할 때 어떤 결과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조정은 더 말하고, 들을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함께 갈등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 직면한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갈등상황에서 당사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경향이 높다. 강한 감정이 앞서 각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해결하

17)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어떠한 조정이든지 중요한 요소이다. 형사조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사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은 조정의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면 좋겠는지 등등 실제 원하는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표현은 가시가 돌쳐 거칠어지고, 소통을 통해 함께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관계 단절로 문제해결을 하려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말하고 듣기보다는 대리인을 통해 결과 중심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더욱 간접적으로 되고 단절되게 된다. 내가 답답하고, 상처받은 것,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여 결국은 가벼운 분쟁이 중범죄로 발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는 일에 몰두하게 된다.

조정과정은 이러한 소송 등의 법적 해결과 달리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에 관해, 상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이 되며, 이렇게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문제해결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관계일 때 더욱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특히 피해·가해자가 만나는 조정의 자리는 서로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두려움이나 분노를 해소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형사조정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의료기기 체험관에서 화상을 입은 피해자가 체험관의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는데, 체험관의 대표는 자신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죄명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계속 거부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그러한 죄명이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고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라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었던 피해자는 피고소인이 ‘고발하실 거면 고발하시라’는 말에 분노했던 과정¹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피고소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18) 피고소인은 피해자 가족의 행위, “이놈의 새끼들 문을 단개꿈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또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돈을 뜯기 위해서 온 것이지, 좋게 사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한다. -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Ⅰ) 참여관찰 녹취록 중에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직접 만나 서로의 얘기를 함으로써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④ 조정은 승패가 아닌 모두 만족하는 창의적 방법을 찾는 것이다.

조정 목표는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나 요구를 각각 인정하고 이에 근거한 합의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은 각각의 이해와 요구에 입각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 조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행동에 대해 그 범죄행동의 내용을 밝히고 처벌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의 피해와 손실에 대한 회복과 책임을 지는 것에 있다. 물론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형사조정은 ‘회복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검찰도 고소사건 형사조정제도 시행의 기대효과로 사건 당사자인 국민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과도한 사법비용 지출 부담과 사회적 명예실추 등의 부담을 덜고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당사자인 피해자도 자신이 범죄행위로 입은 손실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내고 가해자도 범죄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상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서로 만족스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과정이 관계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갈등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묵은 오해나 감정, 또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형사조정지침 중 조정위원의 임무 조항에 비공개 원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담당위원은 형사조정 실시 도중 알게 된 피의사실이나 피해사실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자뿐 아니라 조정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도 모두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비밀 준수 의무란 조정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조정의 목적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며, 또한 조정과정이 소송을 위한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조정자의 역할

조정은 갈등 당사자들 간의 협상이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되어 의사소통의 끈이 끊어질 때, 중립적인 제3자가 의사소통을 도와 당사자 간 협상에 간여하는 과정이다. 이때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자라 하는데,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하고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들고,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합의에 도달하는 협상과정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돕는 중립적인 사람이다.

조정을 하는 동안 조정자는 ‘중간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 조정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두 갈등 당사자가 조정자가 공평하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느껴야 조정과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조정 조정위원은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형사조정 당사자들의 원만한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위해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형사조정위원이 조정 대상자와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립적 제3자

갈등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문제해결에 접근하기 보다는 감정을 앞세우게 되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상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지게 되어 많은 경우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 조정자는 이처럼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때 갈등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주고, 갈등 당사자들의 견해가 서로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되고 경청될 수 있도록 분위기와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당사자가 서로 만족하며 실효성 있다고 믿는 해결방법을 찾아가도록 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조정자는 갈등현안과 갈등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정하거나 직접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조정자는, 증거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를

과악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다르며 갈등 당사자들 문제를 조사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중재자와도 다르다. 판사나 중재자가 ‘문제해결방법을 결정하거나 제시하는 사람’인 반면, 조정자는 대화절차를 만들어 단절된 갈등 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도와,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② 소통의 끈을 이어주고 절차와 과정을 돕는 제3자

갈등분쟁이 격화되면 갈등 당사자들 간의 대화의 끈은 끊어지고,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져 관계마저 단절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곤 한다.

조정과정에 참여한 갈등당사자들은 조정자의 도움을 받아 단절되었던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배경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며,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이 과정은 악화된 관계 속에서 증폭되었던 불신을 견어내고 신뢰를 회복해 가는 과정이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조정자의 도움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 찾아낸 해결방법은 갈등 당사자 상호간에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약속과 합의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조정자의 또 다른 역할은 조정의 과정을 통해 갈등당사자들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합의안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당사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

3) 조정 과정¹⁹⁾

여기서 조정의 과정은 조정 준비 단계부터 조정이 종료된 시점까지를 말한다. 준비단계는 조정이 신청된 뒤에 갈등 당사자들이 함께 만나기 전까지 준비해야하는 단계를 말하며, 이후 단계는 조정자와 갈등당사자가 만나서 진행되는 과정²⁰⁾이다. 여기서는 준비 단계와 본 조정단계로 구분한다.

19) 일반적인 조정 과정에 형사조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절차를 포함해서 정리하였다

20) 모든 조정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항상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조정은 조정자와 갈등 당사자가 한 장소에서 만나 진행되는 형식으로 한정해서 사용한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는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의뢰하고 피해·가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나는 조정을 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검찰과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는 일이다.

① 조정자의 배정

조정위원은 현재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위촉한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이사장이 개별사건을 담당할 위원을 3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형사조정위원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 등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조정위원이 조정 대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기타 형사조정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고, 형사조정 대상자는 이사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조정자 배정은

- 사건을 접수받은 화해조정 관리자는 접수 사건의 내용, 발생지역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정자, 협력조정자를 선정하여 사건을 의뢰한다.
- 배당을 받는 조정자는 담당하는 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모든 참석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관리자는 조정자를 선정한 후 조정자에게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계하고, 대화모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
- 더욱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해당사건을 다른 조정자에게 재배당할 수 있다.
- 조정자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해야한다.
 - 근접성 / 가용성 :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고 모든 조정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며, 주요 참석자들과 갈등소지가 있는 조정자는 피할 것
 - 성별 적합성 : 참석자의 성별이나 지역 등을 고려할 것
 - 특수한 측면 :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건에는

특수한 기술이나 경험이 있는 조정자를 배정할 것, 현재 형사조정 개별 사건 담당위원 가운데 1명은 가급적 변호사, 법무사, 법학교수 등 법조실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전문분야 의견이 필요할 경우 당해 사건의 조정위원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로부터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 제출 받을 수 있음.

- 여러 명이 조정을 할 경우에는 조정자사이의 역할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② 당사자의 조정 참여의사 확인과 동의

형사조정의 의뢰절차는 검찰 접수 고소사건과 경찰 송치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고소인 또는 당사자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의 이루어져야한다. 검찰 접수 고소사건은 일반인들이 형사조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동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든, 권유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 모두 조정에 동의할 때이다. 당사자가 문제를 대화로 풀 의지가 있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조정에 동의한다. 당사자 동의가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대화하며 결론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책임지려면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조정자가 누군가의 편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염려나 오해가 생기면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사자로서 조정자가 중립적 제3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③ 사건에 대해 이해 :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형사조정 대상 사건이 검찰에서 의뢰되면 형사조정의뢰서 접수일자, 형사조정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등 별도의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현재 형사조정에서는 형사조정기일 이전에 검찰의 형사조정의뢰서 및 의견서 등을 사본하여 담당조정위원에게 송부하여 조정위원들이 사전에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형사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수사기록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록 사본을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정위원은 이를 기초로 조정 참가자들의 갈등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대략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갈등의 원인, 배경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통을 돕는데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조정과정에서 주요한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등 조정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갈등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이유, 다시 말하면 조정에 어떠한 기대를 갖고 참여를 결정했는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핵심이 되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조정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④ 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조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인식이 낮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정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해 갈등 당사자들에게 미리 교육을 할 수도 있다. 대개의 경우 조정자가 결론을 내리면 당사자는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⑤ 피해, 가해 당사자 사전접촉²¹⁾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자는 정해진 조정 날짜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만나는 것으로부터 조정자의 역할이 시작된다. 형사조정지침에 따르면 현재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의 일방 당사자와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따로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의 형사조정제도 준비단계에서는 회복적 사법 철학을 살리기 위해 조정자가 피해자, 가해자와의 사전접촉을 중요한 과정으로

21) 외국의 대부분 형사조정제도에서는 준비단계에서 당사자와의 사전 접촉을 매우 중요한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의 철학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당사자들이 그 의미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제도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었지만 일반적 사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한다. 특히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소년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되었던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Family Group Conference 모델)에서는 예비조정과정을 통해 조정자가 피해·가해 각 당사자를 만나 당사자의 문제의식과 의지를 파악하고 조정과정에 대한 안내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험연구를 통해서도 준비단계의 예비조정은 조정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고 있다. (김은경·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의 형사조정과 차이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준비단계에서의 당사자의 조정 참여의사 확인과 동의, 사건에 대해 이해,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의 실무자가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정리된 내용을 조정자가 미리 받아 준비하는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외국의 경우 조정자가 피해, 가해 당사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 얻거나 만들어간다.

<참고>

**미국의 피해자-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에서
피해, 가해 당사자 사전접촉에 대하여**

미국의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에서는 조정 전 당사자들에 대한 사전 접촉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경우 몇 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지만, 실제 대면 접촉하는 조정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은 몇 주가 소요된다. 조정자는 조정 전 준비과정에서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정 전 정보수집과 상호 신뢰도 형성 등의 준비절차를 거친다. 조정자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전 준비를 위한 접촉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접촉하도록 권유되고 있다. 준비절차는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대면 접촉으로 이루어진다. 정식 조정절차 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 혹은 서신 등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것도 조정자의 조정 전 사전접촉 및 준비과정에 포함된다. 1999년을 기준으로, 78%의 조정절차 참가자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상호간의 준비접촉을 했으며 조정자 혹은 조정제도의 여러 운영자라든지 직원이 사전 접촉을 준비했다.

조정자는 피해자와의 사전 접촉에서는 피해자가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피해자의 견해를 청취하고 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정자의 임무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견해에 대하여 공감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인내심 있게 청취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명하며 때때로 피해자의 표현을 적절히 요약하고 환기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 도중 간간히 필요한 시기에 피해자가 선택할 피해자-가해자 조정제도와 조정자 자신에 관한 사항들 즉 조정자로서의 혹은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조정자는 정식 형사절차와 조정절차 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요약하여 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하다면 여겨지는 경우 조정자는 가해자의 신상과 현재의 감정 상태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다.

조정자는 또한 가해자와도 피해자와 동등한 수준의 사전접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조정자는 가해자에게도 역시 신뢰감과 유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조정자는 피해자를 대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가해자를 대하고,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견해를 주의 깊게 청취해야 한다. 또한 조정자는 조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하며 조정이 가해자의 선택사항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는 해결책인 금전적 보상, 지역사회봉사, 개인적 봉사, 재산헌납, 사과, 가해자를 위한 상담과 치료, 기타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방적인 보상 등이 있다고 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탁희성·강우예(2008:55-56).

(2) 본 조정 단계

① 준비단계

조정자는 시안에 대해서 숙지하고, 좌석배치 계획을 세우며, 도착하는 사람을 맞이한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참석자들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석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좌석 위에 이름표를 놓아두는 것이 좋으며 참석자들 간의 가능한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좌석을 배치한다.

조정 자리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는 메모지와 펜, 참석자 명단, 합의사항 양식, 이름표, 휴지 등이 필요하며, 조정자는 시안에 대한 정보 기록과 조정 중에 유용한 질문의 목록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좌석배치는 참석자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좌석은 등근 원의 형태로 배치하고, 조정자와 기록자 등 조정 진행 관련자가 마주보게 하며,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마주볼 수 있도록 배치한다. 참가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좌석 위에 이름표를 놓아두는 것이 좋다.

② 1단계: 도입(Introduction)

조정자와 당사자가 함께 모이는 본 조정의 처음 단계이다. 이 시간에는 조정자와 각 참석자를 소개하고, 형사조정의 목적과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사건 경과를 보고를 통해 조정이 열리게 된 과정을 설명한다. 도입단계는 조정과정의 틀을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만드는 시간으로 조정자를 포함해서 처음 대면 자리인 만큼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조정과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약속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갈등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자를 통한 간접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 조정의 목적과 조정에 대한 공개적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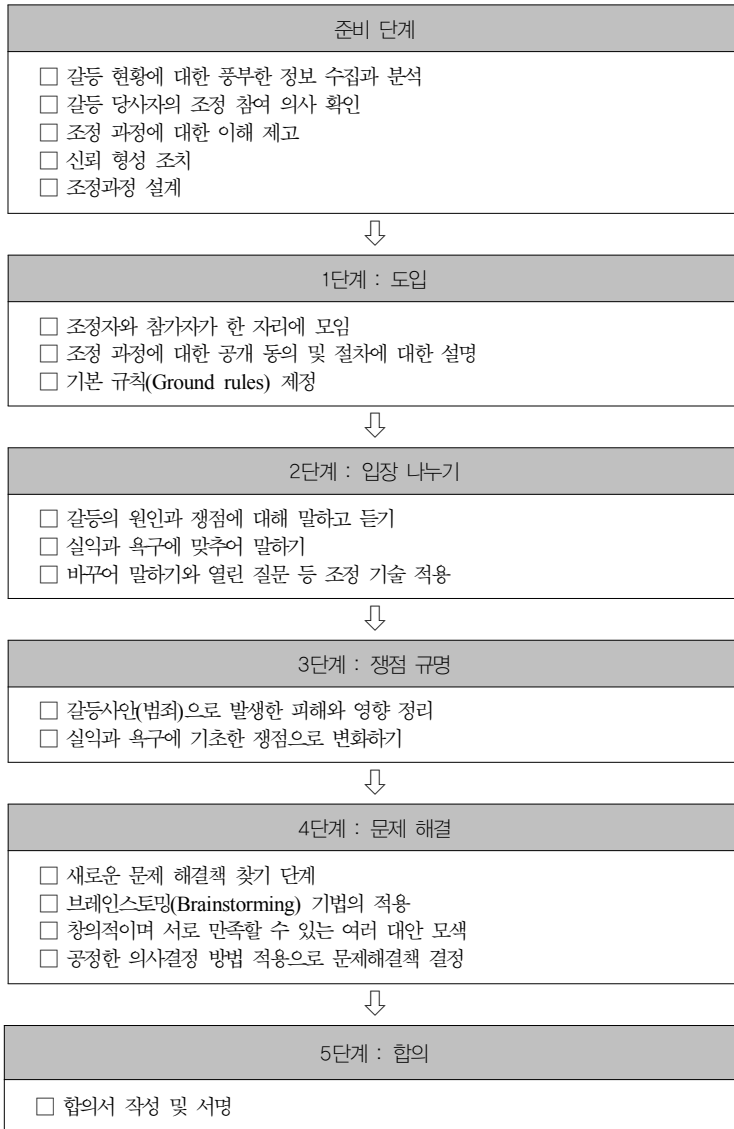
형사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범행결과의 해결과정을 행위자와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돕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나 검찰 등 국가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조정자가 과정을 진행하며 당사자

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피해자처리가 반영된다는 점을 기초로 형사조정이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조정 과정에 대한 동의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 이것은 조정자가 갈등당사자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이지만 본인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같은 자리에 있는 다른 갈등 당사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의 목적과 조정에 대한 공개적 동의를 통해 모임의 목표와 문제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㉔ 조정의 순서와 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안내

이어서 조정의 과정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확인한다. 조정의 3원칙, 즉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 해결, 조정자의 중립성, 비밀보장에 대하여 주지시킨다. 아울러 조정과정은 갈등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문제해결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역할이며 책임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 과정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것은 조정자임을 설명함과 동시에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이 함께 지킬 규칙(Ground Rules)을 함께 정하고 난 뒤, 앞서 말한 과정이나 원칙 그리고 규칙을 조정자가 집행함으로써 과정을 진행하고 통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2〉 조정 과정

㉔ 규칙의 소개와 결정

진행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자·서로 존중하자·비방하지 말자·필요시 휴회를 요청할 수 있다’ 등의 기초 안을 조정자가 준비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대로 집행하거나 추가 의견을 받아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의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㉔ 사건 경과보고

보고 사실에 대해 가해자가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형사조정외의 경우 가해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조정의 전제이다. 이것은 다루어야 할 쟁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범죄피해자센터나 의뢰기관 관련자가 간략한 사건 개요를 보고한다. 협력조정자가 이를 할 수도 있다.

③ 2단계: 입장나누기(Story-Telling, Listening)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이야기하기, 듣기는 조정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를 통해 당사자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갈 신뢰를 형성하고, 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 갈등의 역사, 서로의 관계, 강한 감정과 편견 등 갈등상황에서의 각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갈등 사안(사건)에 연관된 사실을 규명하고 그 행동이 당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충격을 밝힌다.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이야기뿐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까지 충분히 드러내고, 충분히 이해되어야 갈등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는 피해, 가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 사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영향이나 감정 등이 충분히 표출될 때 쟁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가 서로 충분히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반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정자는 각 당사자들이 차례로 분쟁의 원인, 진행과정,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요구, 감정 등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조정자는 다른 당사자가 이야기 도중 끼어들거나 하지 않도록 규칙을 상기시키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피해자·가해자 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피해·가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할 경우 우선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 단계의 목적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확대하거나 징계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조정자는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를 하여 당사자들이 존중감을 느끼면서 이야

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조정자는 각 당사자들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기를 통해 감정적, 인신 공격적 말에 가시를 빼고 당사자들의 갈등과 요구하는 바를 중립적으로 드러내준다.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 드러난 갈등 외에도 묵은 감정이나 숨은 이익, 요구들을 당사자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자·가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로 인해 어떤 영향·정신적, 물질적 손상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같은 열린 질문이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내기에는 효과적이다.

조정을 하다보면 언제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하는지 헛갈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때때로 3단계로 넘어간 뒤 다시 당사자들이 논쟁하고, 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것은 2단계 이야기 나누기 단계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럴 때 다시 2단계로 되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다시 여러 소통기술을 이용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를 규명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볼까요?” 하고 제안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④ 3단계: 쟁점규명(Issue-Clarifying)

㉠ 갈등사인(범죄)으로 발생한 피해와 영향에 대한 정리

3단계는 갈등 당사자들의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당사자 간 합의를 보는 단계이다. 우선 당사자들이 갈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구분하며 정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자는 당사자들 각자의 이익(Interests), 요구(Needs), 문제(Problem)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바꿔 말하기, 질문을 통해 돕는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참가자들이 조정의 목적을 재확인하도록 한다.

쟁점규명이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떠십니까?” 등의 질문을 통해 대화의 초점이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이 되도록 한다. 조정자가 사과나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반영과 요약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나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강화

시킨다. 이 시점에서 피해자는 피해의 심각성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완화된다.

<참고자료>

개별회의(Caucus)

개별회의란 조정자가 당사자 또는 조정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당사자들과 따로 사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문제를 다루고자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한 당사자에게 현재 상태에서 다른 당사자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뭔가가 있다고 조정자가 생각할 때 할 수 있다. 개별회의를 통해 당사자들과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해결방안을 찾거나 당사자들이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생겨날 결과와 상황에 대해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실제로 조정회의 참여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정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함께 자리하여 대화를 지속하는 것 보다는 결과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회의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따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배분 등에서 당사자들이 공평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며, 개별회의에서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 수위에 대해 미리 당사자와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별회의에서 조정자가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강요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등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4단계: 문제해결(Problem-Solving)과 대안탐색

4단계의 목적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는 것이다. 즉, 분쟁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 각각 사건으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 이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은 당사자들의 창의성을 북돋우고 여러 가지 선택적 옵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종종 이용된다.

⑥ 5단계: 합의(Agreement), 합의사항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토론과 결정

5단계는 대안탐색과정에서 나온 창의적 대안들을 평가하고, 양 당사자 모두 만족할 만한 실행 가능한 합의안을 만드는 단계이다. 가능한 해결책들의 목록을 평가하기 위해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각각의 제시안들이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공정한지, 실행 가능한지, 실용적인지,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하고 판단해 결정하도록 돕는다. 합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금전배상이 주를 이룰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 배상이 아닌 내용(특정 활동 금지 등)을 담을 수 있고,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결책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만약 한쪽이 더 주도적이거나 더 힘이 세다고 느낄 때 약자는 자신의 요구를 간과한 합의안에 동의하기 쉽다. 조정자는 합의안이 균형 있고, 공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합의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당사자가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합의는 이행되기 어렵다. 특히 피해가해 조정의 합의사항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보다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익침해 정도에 비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합의서는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노력한다든가, 잘해보자든가 하는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시 장소 등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합의된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조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전에 조정자는 합의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들이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좀 더 가능성 있고 구체적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이 실행 가능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려고 합니까?”

“언제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또한 토론자 모두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이 합의의 어떤 부분에 반대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 왜 하고 싶지 않은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형사조정 사건은 통상의 수사절차로 복귀하여 정식 수사가 개시된다.

비록 합의는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갈등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조정 이전보다는 당사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조정자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것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당사자만족도 조사에서 조정이 불성립한 당사자의 경우에도 형사조정제에 대한 만족도가 9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가 6을

넘고 있어, 조정 불성립 자체가 조정에 대한 만족도 자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형사조정에서의 만족도는 조정의 성립여부보다는 합의 내용의 이행 가능성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탁희성 외, 2008).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 역시 당사자들의 권리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존중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조정은 또한 모든 갈등이 조정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⑦ 6단계: 확인(최종 진술, 새로운 출발)

6단계의 목적은 종결과 완료의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다. 조정자는 참가자들에게 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에 대해 감사와 격려를 표하면서 합의안을 강조하는 기회를 갖는다.

6단계에서는 조정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각 참석자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함으로써 갈등 발생과 이후 과정에 대해 상호 간의 소감과 조정결과에 대한 만족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표 3-3〉 조정 역할극 관찰자 체크리스트

1단계: 도입
___ 조정자는 자기 자신과 참석자 모두를 소개했는가?
___ 조정자는 조정의 목적과 과정에 대하여 설명했는가?
___ 조정자는 기본 규칙을 정하고 양측 당사자들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었는가?
___ 조정자는 비공개성의 원칙에 대하여 말했는가?
___ 조정자는 입장 나누기 단계 전에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았는가?
2단계: 입장 나누기
___ 조정자는 이 단계의 의의와 참가자들의 역할을 설명했는가?
___ 조정자는 적극적 듣기를 하였는가?
___ 조정자는 인신공격 금지 등 기본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했는가?
___ 조정자는 발언시간의 균형 등 공평하게 중립을 지켰는가?
___ 조정자는 각 당사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 바꾸어 말하기를 했는가?
___ 조정자는 느낌을 사용하여 당사자의 느낌을 반영하였는가?
___ 조정자는 두 번째로 말한 당사자에게 차례를 기다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했는가?
3단계: 쟁점 규명
___ 조정자는 이 단계의 의의와 참가자들의 역할을 설명했는가?
___ 조정자는 각 당사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격려했는가?
___ 조정자는 바꾸어 말하기를 적용했는가?
___ 조정자는 열린 질문을 하였는가?
___ 조정자는 각각의 쟁점을 잘 정리하고 요약했는가?

- ___ 조정자는 각 당사자의 관심사와 우려(실익과 욕구 등)를 잘 요약했는가?
- ___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실익과 욕구에 기초한 새로운 쟁점으로서의 변화를 돕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기반을 찾도록 했는가?

4단계: 문제 해결

- ___ 조정자는 이 단계의 의의와 참가자들의 역할을 설명했는가?
- ___ 조정자는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 새로운 대안 찾기 방법을 설명했는가?
- ___ 조정자는 문제 해결 대안 등 제안에 대한 비평과 평가를 자제하도록 했는가?
- ___ 조정자는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에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했는가?
- ___ 조정자는 당사자에게 미래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는가?
- ___ 조정자는 공정한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결정하도록 했는가?

5단계: 합의

- ___ 조정자는 당사자들이 동의한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고 확인했는가?
- ___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을 격려했는가?
- ___ 조정자는 합의서가 구체적이고 균형 있게 작성되도록 도왔는가?
- ___ 조정자는 최종 합의서 작성 전에 서로 동의한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는가?

6단계: 확인

- ___ 조정자는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임이나 방법을 정했는가?
- ___ 조정자는 평가서를 작성하게 했는가?(만약 평가서가 있다면)
- ___ 조정자는 당사자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그들에게 감사표현을 했는가?

다. 조정자의 기술

형사조정은 조정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도모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형사사건이 본질적으로 이해의 충돌이 빚어진 산물이며 형사조정에 의뢰되는 개인적 분쟁성격의 사건들은 더욱 그렇다고 볼 때, 형사조정 과정에서 조정에 관여하는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 등 조정 관련자들은 특히 당해 사건처리에 유의해야 한다(송길용, 2007).

즉, 사건처리 시 당사자 이해의 충돌에 주목하여 조정자의 입장보다도 당사자들 입장에서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조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조정 시 조정자의 태도 및 기술은 형사조정을 안전하게 완수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1) 조정자의 자세

(1)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

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주체적 대화에 의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거나 서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조정자도 인내심이 없어지거나 힘을 잃어 조정자로서의 주도권을 잃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조정자의 인내력과 자기 통제력은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

조정과정의 주체는 당사자들이므로 조정자는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으로 양쪽 당사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와 차이점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는 공정한 존중의 태도와 언어사용을 시범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3) 다양한 감정을 읽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대체로 강한 감정과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분노를 보이거나 때로 불안하고 일관되지 못한 감정을 보일 수 있다. 이때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다양하게 읽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만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조정위원은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피해감정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피해심리, 사회에 대하여 느끼는 불안요소, 피해자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취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형사조정이 본래 출발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송길용, 2007).

(4) 진행규칙을 집행하는 단호함

조정자는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조정과정은 통제할 수 있다. 조정자는 형사조정에 참여한 갈등 당사자들이 강한 감정, 오해, 불신들을 지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인신공격, 욕설 등의 행위로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안전하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과정 전반을 통제 할 수 있다. 또한 조정과정에서 적절한 규칙 집행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결단을 내리고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2) 조정자의 기술

(1) 정보수집 및 분석

정보 모으기는 조정사안이 제기된 후 조정자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정보란 갈등사안과 관련한 핵심단어, 수치, 주요 당사자·주변 당사자·잠재 당사자 등의 관련당사자들, 지리적 위치 및 주요 생업수단 등 당사자들이 처한 조건, 관련 법규 등을 포함한다.

형사조정을 실시함에 있어 사건내용을 조정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조정 절차 진행의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조정위원회 운영지침 내용을 보면 조정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조정을 실시하기 어려워 수사기록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장은 지침의 별첨 서식에 따라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수사기록 사본을 송부해 줄 것을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사장의 수사기록 사본 송부요청을 받은 검사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이사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자가 준비단계에서 조사한 자료들은 조정위원들이 분석하여 조정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한다. 갈등의 원인과 각각의 당사자들은 누구인지, 또 이들 각각의 이해와 욕구는 무엇이며, 상호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거나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세세하게 분석하여 분류하고, 정리한다. 갈등을 둘러싼 각각의 요소들을 이해한 후, 필요하다면 조정의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치나 용어들을 숙지하는 것도 대단히 유용하다.

정보수집의 방법은 각 당사자들을 면담하거나, 문헌이나 보도자료 등을 조사하는 등으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건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서화된 관련 기관의 사건 기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외국의 경우 준비단계에서의 예비 조정을 통해 피해 가해 당사자로부터 직접 그들의 관점에서의 배경, 갈등 또는 사건 내

용, 원하는 관심사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과정의 목표는 갈등시안 자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조정자의 입장을 정하기 위함에 있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2) 의사소통 기술

①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적극적 듣기는 말하는 사람의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점검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방법을 말한다. 적극적 듣기는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조정자가 적극적 듣기 기술을 사용하면, 갈등 당사자 들은 조정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믿음과 존중감을 갖게 되고, 조정자와 갈등 당사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많은 경우의 갈등은 의사소통의 부재나 부정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조정자가 적극적 듣기 기술을 활용하면 당사자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적극적 듣기 기술을 사용하여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정리되지 않거나 혼돈된 말의 요지를 정리하여 반복해 줌으로써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요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적극적 듣기는 열린 질문하기, 바꾸어 말하기, 요약하기 등과 함께 사용하여 주장 이면의 드러나지 않은 실익과 욕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조정자의 적극적 듣기 요령

△ 말없이도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

- 상대방에 눈의 초점을 맞춘다.
- 몸의 방향도 상대방을 향하게 하고, 고개도 끄덕인다.
-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등 장난하지 않는다.
-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고, 시작한 말을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들어준다.
- 질문하고 답을 기다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로 조용히

기다려준다

△ 말로써 반응하는 기술

- “예”, “음~”,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겠어요”, “그렇군요” 등의 말로 용기를 준다.
-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말해본다
- 상대방이 느낌을 포함하여 받아준다
-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등의 열린 질문으로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 조정자가 삼가야 할 적극적 듣기를 방해하는 태도

- 비교하기 : “그런 일은 OO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마음읽기 : 미리 앞서가며, “그래서 절망했다는 말이지요?”
- 말 자르고 끼어들기 : 말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는 아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 단말하기 :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참,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건 어떻게 되었지요?”
- 한술 더 뜨기 :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야. OO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 충고하기 : “제 생각에는 당신들은 ……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평가하기 : “대응을 참 잘하셨습니다.”
- 동정하기 : “참 불쌍하게 되었네요.”
- 비위맞추기 : “당신들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건 당신들 탓이 아니에요.”
- 야단치기 :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충고하기 등 조정자의 의견이 반영된 사례> 22)

위원 1 : 그런 말들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좀 있다 이야기 할 것이고, 일단 조정에 동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말입니다.

위원 2 : 사건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것 인데, 거기에 동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고소인은 동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고소인을 위해서 조정을 해 달라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다른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면 서로 힘만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조정동의서) 읽어보시고 동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고소인 : 예…….

위원 2 : 혹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1 : 이것은(조정동의서)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들하고 상담을 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위원 2 :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고소인 : 부당한 것은 없지요.

위원 2 :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좀 주저하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소인을 생각해서 불려서 사건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②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는 조정자가 갈등당사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 그리고 조정자가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듣기의 또 다른 기술이다.

바꾸어 말하기는 갈등 당사자의 진술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정자의 언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바꾸어 말하기를 통해 듣는 사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바꾸어 말하기를 통해 말하는 사람에게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대단히 화가 나서 감정 격한 말을 섞어 쓴 경우, 바꾸어 말하기로 그 말을 되돌려 주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보게 하면, 감정을 식히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는 방법은 말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듣는 사람의 말로 단지 바꾸어 말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조정자의 ‘바꾸어진 말’을 들은 당사자는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면, “예, 그래요”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말이 아니고~”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인해 주게 된다.

22) 이동원, 조용업(2008). 참여관찰 녹취록 중.

또한 군더더기를 빼고 정리해서 바꾸어 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전개에 대한 중언부언을 조정자는 요지만을 정리하여, “이러이러 해서 저러저러 하다는 거지요?”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 섞인 공격적인 말의 가시를 빼고 핵심만을 되받아 주어 다른 당사자에게 통역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측 당사자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순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라는 말을 “OO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로 바꾸어 말하면 다른 측 당사자는 조정자의 통역한 말을 통해 ‘거짓말’이라는 ‘공격’에 반응하기 보다는 다른 ‘사실’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조정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관적이고 감정 섞인 부정적인 표현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듣는 사람의 감정을 울리지 않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정자가 바꾸어 말하기를 할 때는 선부른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말해야 한다. 또한 과장되지 않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실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말해주는 것이 좋다. 중요한 구절이나 문장은 말하는 사람이 표현한 그대로 반복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조정자가 더 많은 말로 바꾸어 말하여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 바꾸어 말하기를 위한 유용한 문장 형식

- 당신이 말한 것은 “.....”라는 것인가요?
- 제가 당신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신건가요?
-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다 라고 하는 거지요?

③ 감정 반영하기(reflecting feelings)

감정 반영하기란 말한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갈등상황에 놓여 있던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위해 조정 감정도 있지만, 오해로 인한 것이든, 상처에 의한 것이든 상대자에 대한 강한 감정, 긴장감이 존재한다. 감정이 분출되고, 해소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문제해결로 갈 수 있다. 조정자는 당사자들의 이야기 에서 당사자의 감정을 찾고, 정의하여 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감정 반영하기는 비껴 말하기의 형태와 결합되어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전부 이해했는지 확인할게요”, “○○씨 이야기는 △△씨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화가 났고, 예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감정을 정의하는 것은 긴장과 실망, 슬픔을 완화시키고 말이 이해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 때가 조정자가 사실이나 당사자의 감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꿔 말하기를 했다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정자가 잘못 짚었다면 바가 그 자리에서 당사자가 반영한 사실과 감정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자는 다양한 감정, 느낌을 표현하는 언어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느낌 언어를 체득할 필요가 있다.

④ 중립적 언어의 사용(neutral language)

중립적 언어란 감정이 실린 언어와 반대되는 개념의 언어를 말한다. 감정이 실린 언어 중에서 특히 흥분된 언어는 갈등 당사자에 대한 비판으로 가기 쉽고, 당사자를 더 흥분시키거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조정자는 당사자의 공격적이고 가시 돋친 발언에 대해 바꿔 말하기를 통해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사실과 감정을 중립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한 이야기를 내 식대로 표현하여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꿔 말하기이지만 공격적이고 비난 섞인 말을 그대로 바꿔 말한다면 당사자들의 흥분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나아가 조정자가 한쪽 당사자만을 편드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조정자에 대해 불신을 갖게 할 수 있다. 당사자의 가시 돋친 비난을 조정자가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빼고, 중립적 표현으로 그 이면의 감정과 사실을 찾아 드러내줄 필요가 있다. 중립적 언어를 통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⑤ 요약하기

요약하기 또한 조정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기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사실 요약하기는 조정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마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요약하기 기술은 조정과정이 지체되거나 난국에 빠져 있을 때, 이제까지 함께 이룬

것들을 요약하여 조정과정에 활기를 불어넣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 요약하기 기술을 활용하면 중간정리를 하고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요약하기 방법으로는 갈등 당사자들이 진술한 것들 중 요점만을 간결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다. 즉, 요약하기를 통해 양측의 논점, 관심사항, 이해, 욕구, 가능한 해결방법, 제안사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필요한 시점마다 짚어주면서 진행하여 갈등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는 것을 돕는 것이다.

또한 갈등 당사자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정리하여 상대에게 전해주는 방법이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현재까지 진전된 것을 정리하여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면 이루어낸 성과를 이어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⑥ 효과적으로 질문하기

조정자가 활용하는 질문하기는 조정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내용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조정자의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갈등 당사자로 하여금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문하기를 통해 모호한 사실을 명료하게 할 수 있으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내기도 하며, 입장을 만들게 되는 이면의 감정도 드러내어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이고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갈등 시안으로 인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조정자는 적절한 열린 질문으로 갈등 당사자의 감정과 경험에 대한 반응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조정자의 열린 질문을 통해 진술되는 갈등 당사자의 이야기는 상대측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때로는 조정자의 질문에 대한 갈등 당사자의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진술을 조정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상대측 당사자 역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정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라면,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질문하기는 열린 질문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당신은 그런 일이 생겨서 화가 났습니까?”라는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다. 같은 내용

의 질문이라 해도, “당신은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요?”라는 식으로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생각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자의 질문이 조정자에게 과도한 주도권이 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상에서 사용되는 질문들은 대체로 정보를 탐색하며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사되기 보다는 “왜, 도대체?”로 시작되는 따지기식 질문이거나(예: “왜 늦은 거야?” “도대체 뭐 일을 그렇게 한 거야?”), 전하고 싶은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질문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이끌기 형 질문들이 많다(예: “합의를 안하면 배상액이 더 커질 텐데 민사로 가는 것 보다는 지금 합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나아가 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질문도 자칫 따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왜’라는 직접적 질문 보다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소리의 톤 또한 비언어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부드럽게 유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 질문의 예(박수선, 2008)

① 시작할 때

: 누가 먼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② 문제 탐색

: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었나요?

현재의 문제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③ 관계의 탐색

: 과거에 둘 사이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현재의 문제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변화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④ 당사자 외 삼자확인

: 두 사람 사이의 문제에 영향을 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⑤ 느낌

: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⑥ 의도

: 그렇게 말한 데는 혹시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무슨 뜻이 있나요?

⑦ 다른 사람의 의도를 가정해보기

: 상대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⑦ 분명하게 말하기

조정자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당사자들의 모든 진술과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들이 명료하고 분명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각 단계별 안내, 갈등의 원인 및 쟁점사항, 당사자들이 동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합의사항 등에 대해 가능하면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

(3)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① 감정, 분노 다루기

㉠ 감정 다루기

조정 시에 양 당사자들의 느낌과 감정을 반영하는 것은 강한 감정, 특히 분노를 제거하고 가라앉힐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조정자는 진술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정의 할 수 있다(황지태·노성호, 2006).

당사자의 분노와 가시 박힌 이야기를 감정을 반영하는 바깥 말하기를 통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공감한다면 당사자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기분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 당사자의 강한 감정이 지속되어 당사자 간에 의견충돌이나 대립이 격화될 때 또 다른 분노를 다루는 방법은 휴식을 취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잠시 산책을 하거나, 물을 먹는다거나 움직임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갈등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각각 답변을 글로 쓰게 하면 때로 당사자들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정의 목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다. “이번 조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얻고자 하는 것을 모두 적으

세요”라고 할 수 있다.

㉠ 분노 다루기

분노란 어떤 것에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화, 불유쾌한 충동으로 왈각 치미는 노여운 감정을 말한다. 분노가 생길 때면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근심 걱정이나 욕구불만 또는 두려움 등의 강한 감정들을 야기하면 심장박동과 혈액의 흐름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면, 몸이 외부에 대한 행동을 준비하면서 심장박동이 증가하게 되고 호흡이 가빠진다.

그런데, 심장박동의 증가와 가쁜 호흡은 폐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혈류로 내보내게 하고 심장은 근육으로 더 풍부한 혈액을 펌프질하여 이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근육에 힘을 실어주므로 몸이 아주 강해진다. 그러나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됨으로써 뇌로는 혈액이 덜 보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이성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장 논리적인 생각을 필요로 할 때에 반대로 감정이 격화되고 판단력은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분노는 신체적인 반응이며, 또한 일시적인 반응이다. 사람에 따라 분노를 일으키는 자극이나 분노가 유지되는 시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노가 일시적 신체현상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일이다.

㉡ 조정 시 분노가 당사자들에게 끼치는 영향

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는 조정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조정자의 의사소통 기술은 당사자들 간 논쟁과 분노를 경감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들이다. 당사자들 간 갈등은 분노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조정 시 조정자는 그 폭발과 긴장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편견 다루기

편견은 사람, 사물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감정이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사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서 전체를 균형 있게 보지 못할 때에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사람들이므로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조정자가 되려면 자신의 편견을 인식해서 그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의 편견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조정의 과정에서 때로는 어떤 당사자가 말하는 방식과 내용이 거슬린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무의식적인 반응일지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그 사람을 다른 당사자에 비해 덜 쳐다본다거나, 기분이 상한 어조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이러한 편견의 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화를 잠재우며, 자신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정자로서 갈등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의 행동에 대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중립적 표현의 바꿔 말하기 등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갖는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는 노력이 감정해소와 관계회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4) 역기능적 조정기술

조정은 조정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 피해야 할 행동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의 “역기능적 조정목록”²³⁾은 조정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기술하고 있다.

〈표 3-4〉 역기능적 조정기술 목록

<p><역기능적 조정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당사자에게 편견 표시 • 안전을 너무 딱딱하게 진행 • 추측이나 오해를 받아들임 • 위협이나 비난 • 자극적인 단어사용 • 진실함의 부족 (지어낸 듯 들리거나 관심 없는 듯 보임) • 자신감 부족을 보임 (조정자로서나 조정절차에 대한) • 당사자의 위치에 초점을 둠 • 갈등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놓고 비난이나 판단 • 해결에 도달하고자 심각한 문제를 그냥 지나침 • 당사자가 자기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음 •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잘못 관리 • 조정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인도 • 합의할 것을 강요 • 당사자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23) 앨런 에드워드 바스키, 한인영·이용하 역(2005). 이 책에서는 중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은 mediation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 조정이라고 바꾸어 표현하였다.

- 너무 빠른 진행
- 한 당사자가 주도권을 잡게 함
- 당사자의 도전에 대해 방어적
- 비-조정자적 역할(선을 넘어 치료나 법률적 조언을 시도)
- 당사자가 현실에 대해 표현하도록 하기 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주장
- 정보나 제안 보다는 충고를 하려 함

(5) 대안탐색 기술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형사조정에 참여하는 갈등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정해진 목적을 갖고 조정에 참여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각각 자신이 원하는 해결방법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주장할 경우가 많다. 브레인스토밍은 이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만이 최선일거라는 경직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사결정이나 실행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해 보이는 안을 생각나는 대로 ‘부담 없이’ 제시한다는 의미이고, 상대 참가자의 비판이나 냉소적 반응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 놓고 떠오르는 안을 ‘부담 없이’ 제시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대안을 생각해 보고, 변형시키고, 발전시켜 전혀 새로운 제3의 해결책을 내는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조정자는 양 당사자에게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규칙을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그 규칙을 따르며 대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진행에 유념할 수 있다.

조정자는 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아이디어를 비평하거나 반박하는 말은 삼갑시다.”

조정자는 특히 격려를 하고 긍정적이어야한다. 당사자들이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야한다. 이 확신은 당사자들의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다.

조정자는 갈등 당사자들이 미래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의미 없이 이미 일어난 일에 불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브레인스토밍을 안내하는 좋은 방법은 질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면 합니까?
-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 이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만약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겠습니까?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매뉴얼

프로그램 1

회복적 사법의 이해

가. 개요

- 지도자 : 1명
- 참여인원 : 30~40명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 가능)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60분
- 준비물 : 강의 유인물

나. 주요내용

‘회복적 사법’은 형사화해 조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범죄를 국가가 만들고 지키도록 강제한 물(법)에 대한 침해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피해 행위로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회복적 사법은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범죄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모든 사람의 상처를 최대한 아

물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현 사법제도의 관점인 응보적 사법과 새로운 패러다임인 회복적 사법의 비교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특징 및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 진행과정

- 회복적 사법의 사례를 들려주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사례로 처리 되었을 때와 다른 방식(사법처리) 처리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가해자의 장래와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관점을 중심으로-(도움1-1. 엘미라 사건)
- 사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회복적 사법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 (도움1-2. 사법제도의 특징과 회복적 사법정의의 특징)
-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 비교를 통해 응보적 사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및 회복적 사법의 필요성과 장점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도움1-3.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 비교)
- OX 퀴즈를 이용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부가설명을 통해 회복적 사법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는다. (도움1-4. OX 퀴즈)

라. 유의사항

회복적 사법의 도입배경, 특징, 장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강의를 구성하며, 특히 회복적 사법이 추구하는 것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로 발생한 손실과 깨어진 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변화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마. 도움자료

도움 1-1 엘미라 사건 [북미의 첫 번째 회복적 사법의 실천 프로그램 사례]

1974년 어느 날 캐나다의 작은 도시 엘미라(Elmira, Ontario)에서 수십 군데의 집을 털 혐의를 받은 두 명의 십대 용의자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 지역 교정위원을 맡고 있던 메노나이트 교도인 마크 안치(Mark yantzi)와 동료인 데이브 월트(Dave Worth)는 담당 재판관을 찾아가 본인들이 이 십대 용의자들을 데리고 피해를 당한 집들을 찾아 합의를 보게 하는 건의안은 담당 판사에게 제안하였다. 물론 담당판사의 첫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을 어기고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소년들을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런데, 막상 심리가 열리고 판결이 내려지자 놀랍게도 담당재판관은 마크와 데이브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소년 용의자들에게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건을 해결할 것을 판결하였다. 단, 한 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시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 두 소년 용의자들은 마크와 데이브와 함께 자신들이 된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대면해야 했고,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 들어야 했다. 그 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이 만족할만한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 문기에 이르렀다. 이사를 간 두 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집에서 이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그들은 봉사활동이나 현금배상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몇 집은 이들이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만도 이 청소년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 두 청소년은 마을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 자료 : 2006년 MCC Korea Reunion, Virginia USA에서 있었던 Dave Worth와 대화기록 중

도움 1-2 사법제도의 특징과 회복적 사법정의의 특징

● 사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1. 현재의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뿌리를 두고 있다.
2. 범죄는 국가가 지정한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한다. (Crime = Law Breaking)
3. 누가 범인이고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된다.
4. 범죄 해결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과 감정은 무시되기 쉽다.
5. 재판과정에서 피고 측은 상황이나 증거에 관계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즉,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는 더욱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6. 처벌의 근본적 원칙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가해자도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7.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도 가해자는 국가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남는다.
8. 피해자는 법정과정에서의 소외감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9. 범죄를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기고 더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줄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나타난다.

● 회복적 사법정의의 주요 특징

1. 회복적 사법정의는 범죄를 이해하는 초점이 인간관계를 깨뜨린 것에 있다. (Crime = Relationship Breaking)
2.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과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
3. 양측 간의 직접적 대면을 통해 피해자의 요구와 가해자의 책임을 통감하게 되고, 처벌에 대한 합의까지도 자발적으로 이뤄낸다.
4. 기존 재판제도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요구를 채우는데 중점을 둔다.
5. 법을 집행하는 전문가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소정의 훈련을 받아 사건의 해결을 돕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가해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도록 돕는다.

도움 1-3 회복적 사법과 응보적 사법의 관점 비교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점 비교>

응보적 사법	비교	회복적 사법
“누가 범인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관점	“누가 피해자인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유죄 확정 중심 과거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는 이차적 경쟁적 개인주의 모델 당사자주의 차이를 강조 피해를 가해자에 대한 피해로 균형 죄 값은 처벌에 통해 갚아짐 가해자 초점, 피해자 무시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 피해자는 정보 결여 손해배상 결여 피해자의 고통 표현 제한적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조치 중심 가해자는 방어적, 수동적 잘못에 대한 대응을 국가가 독점 가해자의 책임회피 조장 개인적 감정은 부차적 요소 가해자 자체에 대한 비난 공동체에 대한 가해자의 결속 약화 가해자를 단편적으로 인식 올바른 규칙으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 핵심사항이 아님 절차가 개별적, 분리 조장 반성과 용서가 권장되지 않음 전문 대리인이 핵심적 역할 승·패의 결과가 일반적	특징	문제 해결 중심 미래에 초점 당사자의 요구가 일차적 상호성과 대화를 통한 협의해결 공통분모의 탐색 배상과 원상회복을 통한 균형의식 죄의 대가는 바르게 회복함으로써 갚아짐 피해자 요구 중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핵심 당사자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손해배상 일반적 피해자의 고통 인식, 슬픔을 나눔 가해자에게 해결에 관한 역할 부여 피해자, 가해자, 공동체의 역할 인식 당사자 모두가 해결할 책임 있음 가해자의 책임 있는 행동 요구 슬픔 등 감정 표현 및 인식 권장 피해행위에 대한 비난 가해자의 공동체 통합 강화 가해자를 전체적 맥락에서 인식 올바른 관계로서 정의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중심 절차의 목적은 화해 반성과 용서 장려 당사자 중심, 전문가의 도움 제공 상생적 결과 가능

자료 : Zehr(1990: 211-214)

도움 1-4

O / X 퀴즈

● 회복적 사법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OX퀴즈

1. 현재의 사법제도는 응보적 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O)
2. 어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회복적 사법이다.(X)
3.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X)
4. 범죄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행위에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응보적 사법이다.(O)
5. 응보적 관점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회복적 사법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O)
6. 피해가 가해자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을 가려낸다.(X)
7. 조정자는 조정과정을 통해 문제를 직접 해결해준다.(X)
8. 회복적 사법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전문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한다.(O)
9.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국가와 가해자가 주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X)
10. 회복적 사법을 반성과 용서를 장려하는 특징을 지닌다.(O)

프로그램 2

조정 및 조정자의 역할

가. 개요

- 지도자 : 1~3명
- 참여인원 : 10~40명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60분 또는 90분
- 준비물 : 워크북

나. 주요내용

조정위원들이 갈등당사자에 대한 조정을 하기에 앞서 조정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확인하며 이상적인 조정자의 자질을 모색한다.

다. 진행과정

- 앞서 소개된 회복적 사법의 의미는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설명한다.
⇒ [관련자료 2-1]
- 일상생활에서의 갈등 사례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갈등해결과정을 실습한다.
⇒ [관련자료 2-2]
-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조정에 대한 개념 및 조정자의 역할을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자료 2-3]
- 이상적인 조정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으로서의 자신의 자질 및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때 조정자로서 필요한 자질, 신념, 태도 등을 질문하고 발표하도록 하며 조정자인 자신에게 스스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유와 함께 이를 발표하도록 한다.
⇒ [관련자료 2-4]

라.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할극이나 발표 등 참여자의 자발적인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참여한 조정위원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지원한다.
- 조정자의 자질, 태도 등에 있어서는 참여한 조정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상황에서의 사례 등을 제시하여 설명한다.

마. 관련자료

【관련자료 2-1】 갈등해결에 대한 접근

1. 갈등해결의 수단

- 물리적·강제적 힘(Power-based)
- 제도·법률(Rights-based)
- 대화(Interests-based)

2. 평화적 갈등분쟁 해결의 접근

- 제도적 접근 : 평화적 갈등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문화적 접근 : 문제해결이 평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개인, 집단, 사회적 문화의 형성

3. 평화적 갈등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

1) 협상(negotiation)

- 제3자의 개입 없이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실과 득을 따져가며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내는 자발적 합의 과정

2) 조정(mediation)

- 대립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중립적 관점에서 쌍방의 합의 하에 갈등 당사자들 스스로 상충적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과정

3) 중재(arbitration)

- 갈등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하도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만, 제3자는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어느 정도 강제적인 직권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4) 진행(facilitation)

- 내재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거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적절한 진

행과 대화의 조절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

5) 중립적 사실조사(neutral fact-finding)

- 분쟁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 갈등이 있을 때, 제3자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진위를 밝히는 제도

【관련자료 2-2】 갈등사례 역할극(role play)

사례 1

내 집 앞에 세워둔 다른 차량으로 인해 내 차가 몇 시간 쯤 못 나가고 있다. 상대차량의 주인은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 그 동안에도 계속 내 집에 세워둔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런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집주인은 화가 난 나머지 상대방 차량의 바퀴에 구멍을 내어버렸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상대방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는데 이를 보자 깜짝 놀랐고, 집주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다툼이 시작된다.

→ 역할 : 집주인, 상대차량 주인, 제3자

사례 2

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맞고 들어왔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를 보니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났던 흔적이 있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보니 너무 화가 났다.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상황을 물었다. 학교에서 상대방 아이가 우리 아이의 별명을 부르면서 계속 놀렸는데, 그 동안 계속 참아오다가 오늘은 아이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대방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두 아이 모두 상처가 났다. 특히 상대방 아이는 우리 아이보다 좀 더 심해서 얼굴과 팔이 긁혀서 찰과상을 입었다.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교사는 나(아이의 엄마/아빠)와 상대방 아이의 엄마를 이튿날 학교로 오도록 했다. 이튿날 학교에서 상대방 아이의 엄마와 같이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간 우리 아이가 상대방 아이로부터 놀림을 받고 당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면서.....

→ 역할 : 주인공 아이의 엄마, 상대방 아이 엄마, 담임교사

【관련자료 2-3】 조정 및 조정자의 개념

1. 형사조정

- 형사절차에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인 조정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 형사절차와의 차이

- ① 형사조정은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조정자가 필수적으로 절차에 참여하게 됨.
- ② 사건당사자가 화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됨.
- ③ 조정 결과가 사건 처리에 반영됨.

2. 형사조정의 핵심개념

-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 절차 참여
- 독립적인 조정자
- 지역사회의 참여

3. 조정 및 조정자

1) 개념

- 조정 : 갈등분쟁 상황에서 3자가 당사자들 가운데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것. 즉 당사자 간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3자가 개입해서 당사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돕는 것
- 조정자 : 당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사람

2) 조정의 3원칙

- 독립성
- 자율성
- 비공개

3) 조정자의 역할

- 당사자들이 공평하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합의에 도달하는 협상과정을 돕는 중립적인 사람
-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사람
- 서로 다른 견해가 적대감 없이 솔직하게 교환되고,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며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건을 만드는 사람

【관련자료 2-4】 신뢰감을 주는 조정자

1. 자질과 태도

- 인간적인 따뜻함
- 타인에 대한 관심
- 자기 잣대로 평가내리지 않음
- 인정, 존중해줌
- 진심으로 대함
- 신용할 수 있음
- 진지함
-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
- 일관성
- 객관성 견지: 자기 의견이 있어도 내세우지 않음
- 인내심

2. 신념

-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 당사자들은 문제가 되는 쟁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조정자는 조정의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 중립성은 필수적이다.
- 조정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3. 기술

- 의사소통기술

- ①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 ② 중립적 표현으로 바꿔 말하기(Paraphrasing)
- ③ 감정과 경험에 대한 반응 끌어내기(열린 질문)
- ④ 사실 찾아내기(공통점과 차이점 명확히 하기-효과적 질문)

- 사람을 다루는 기술

- ① 분노조절/감정 다루기
- ② 편견 다루기

- 문제해결기술

- ① 합의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들은 것을 분석하기
- ② 규칙 집행하기
- ③ 분석, 정리하기
- ④ 공통의 이해관계 찾기

프로그램 3

의사소통기술

가. 개요

- 지도자 : 1~3명
- 참여인원 : 10~40명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90분
- 준비물 : 워크북, 색종이(색상지), 감정카드(메모지)

나. 주요내용

전 시간에 이루어진 조정자의 태도, 기술 등을 실제로 경험하며 실습해 보는 시간으로, 조정과정에서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인 청취, 바꾸어 말하기, 감정 반영 등의 기술을 익힌다.

다. 진행과정

- 우선 조정과정에서의 조정자의 모습을 관찰하도록 한다. 진행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제외한 다른 지도자 1인과 조정위원 1인이 갈등당사자의 역할을 맡아 실제 조정상황에서의 모습을 재현한다. 지도자는 조정자의 역할을, 조정위원은 갈등당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 지도자는 바람직한 조정자의 모습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조정자의 모습을 각각 보여준다.

⇒ [관련자료 3-1]

- 역할극에서의 조정자의 모습에 대해 조정위원들에게 질문한다. 바람직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해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게 한다.
-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준비한 색종이를 나누어준다. 지도자가 말하는 대로 색종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다 한 후에 색종이의 모양을 서로 확인하게 한다. 이 때 색종이 모양은 모두가 다르게 나오며, 의사소통의 경우도 이와 같이 동일한 말을 듣더라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예, (색종이를) 한번 접으세요, 구멍을 내어 보세요…….

-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인 ‘적극적 청취’, ‘바꾸어 말하기’, ‘감정 반영하기’, ‘요약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조정위원 간 2명씩 짝(그룹)을 이루어 서로에게 실습하도록 한다.

⇒ [관련자료 3-1], [관련자료 3-2]

- 필요에 따라 실습 중간에 활동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대방의 무언의 몸짓(행동)을 보고 알아맞히는 게임을 진행해도 좋다.

⇒ 2인 1조 게임 : 다양한 감정의 그림과 글이 쓰여 있는 메모지(포스트 잇)를 준비하여 상대방 이미에 붙이고, 붙인 사람이 메모지에 쓰여 있는 그림과 글에 나와

있는 대로 무언의 행동을 보여주고, 맞추는 게임이다.

- 그룹 실습 후에는 1-2명을 선정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앞에 나와서 의사소통기술을 직접 재현해 보도록 하며 재현한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들에게 피드백을 하게 한다.

라. 유의사항

-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지도자가 좀 더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방법 외에도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다만 실습이나 활동에 있어서 참여자인 조정위원들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가지 기술을 실습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무질서하거나 방관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인이나 그룹으로 실습을 할 때에는 지도자가 참여자들을 잘 살펴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 관련자료

【관련자료 3-1】

<조정자의 적극적 듣기>

1. 말없이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

- ① 상대방의 눈에 초점을 맞춘다.
- ② 몸의 방향도 상대방을 향하게 하고 고개도 끄덕인다.
- ③ 주변의 물건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등의 장난은 하지 않는다.
- ④ 말하는데 끼어들지 않고 시작한 말을 완전히 끝마칠 때까지 들어준다.
- ⑤ 질문하고 답을 기다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태도로 조용히 기다려준다.

2. 말로써 반응하는 기술

- ① “예”, “음~”, “좀 더 상세히 말씀해주겠어요”, “그렇군요” 등의 말로 용기를 준다.
- ②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다시 말해본다.
- ③ 상대방이 느낌을 포함하여 받아준다.
- ④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등의 열린 질문으로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조정자가 삼가야 할 적극적 듣기를 방해하는 태도>

- 1) 비교하기 : “그런 일은 OO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 2) 마음읽기 : 미리 앞서가며, “그래서 절망했다는 말이지요?”
- 3) 말 자르고 끼어들기 : 말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는 아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 4) 단말하기 :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참, 그 말을 들으니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건 어떻게 되었지요?”
- 5) 한술 더 뜨기 :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야. OO 지역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
- 6) 충고하기 : “제 생각에는 당신들은 ……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7) 평가하기 : “대응을 참 잘하셨습니다.”
- 8) 동정하기 : “참 불쌍하게 되었네요.”
- 9) 비위맞추기 : “당신들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건 당신들 탓이 아니에요.”
- 10) 야단치기 :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셨어요?”

【 관련자료 3-2】 의사소통기술

1. 적극적 청취

1) 특징

- 적극적 청취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더욱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게 만든다.
-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 말하는 사람의 본뜻이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당사자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켜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기능

- 양 당사자의 관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갈등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데 필요하다.
- 당사자의 입장 이면에 있는 실익을 이해하게 한다.

- 갈등에서 오해의 지점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이다.
- 당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 공감을 촉진시킨다.
- 타자에게 신뢰를 준다.

2. 바꾸어 말하기

1) 개념 : 상대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

-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신뢰성)
- 서로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도움
- 대화를 더욱 깊이 유도함
- 쌍방의 대화 속도를 조절함

3) 예

- 당신이 말한 것은 “.....”라는 것인가요?
- 제가 당신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신건가요?
-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다고 하는 거지요?

3. 감정 반영하기

1) 개념 : 말한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 감정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능(효과)

- 감정의 무분별한 표출을 막아준다.
- 긴장과 실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끼게 된다.

- 당사자의 심리,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갈등 당사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3) 예

- “○○씨 이야기는 △△씨가 가 시간에 오지 않아서 화가 났고, 그래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4. 요약하기/간추려 말하기

1) 개념

- 상대가 제기하는 쟁점의 핵심을 요약해서 상대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해주며 전달하는 것이다.
-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을 확인하고, 다른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 그 동안 제기된 쟁점을 정리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2) 기능

- 요약하기 기술은 조정과정이 지체되거나 난국에 빠져 있을 때, 이제까지 함께 이룬 것들을 요약하여 조정과정에 활기를 불어넣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서 정리가 안되고 혼란스러울 때, 요약하기 기술을 활용하면 중간정리를 하고 다음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3) 예

- “그러니까 000씨는 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프로그램 4

조정절차 및 과정

가. 개요

- 지도자 : 1~3명
- 참여인원 : 10~40명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20분
- 준비물 : 워크북

나. 주요내용

조정과정에 대한 절차 및 과정을 파악하고 단계별로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해보는 것이다. 본 내용은 형사화해 조정실무자들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진행과정

- 전체적인 조정의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한다.
⇒ 【관련자료 4-1】
- 세부적인 조정과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그룹으로 나누어서 도입단계(인사~규칙정하기)를 실습한다. (나머지 단계는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마지막에 실제 조정시 나리으로 실습한다)
⇒ 우선 처음에 나오는 도입단계는 갈등대상자와 조정위원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며, 특히 갈등대상자들은 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에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고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 【관련자료 4-1】

- 형사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에, 형사조정 시나리오를 통해 형사조정과정을 재현해 본다.

⇒ 【관련자료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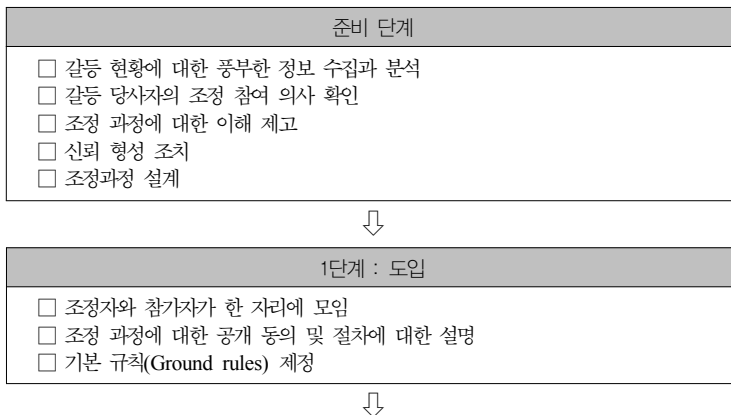
라.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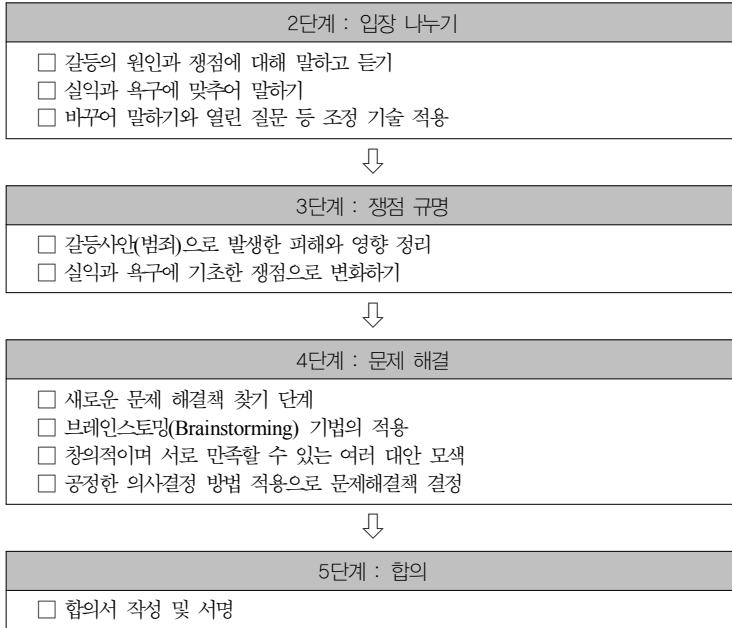
-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정위원들의 고유역할을 숙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적 많이 제시하였다. 다만, 참여한 조정위원들의 조정경력 등을 고려하여 실습그룹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실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 가능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마. 관련자료

【관련자료 4-1】 조정 과정

1. 조정과정





2. 조정절차

① 준비단계 → ② 도입 → ③ 사건 개요 설명 → ④ 피해자의 이야기 → ⑤ 가해자의 이야기 → ⑥ 사건과 경향에 관한 전반적 논의 → ⑦ 쟁점 규명 → ⑧ 전환 → ⑨ 대안탐색/합의 :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⑩ 합의 → ⑪ 합의문 서명날인

3. 단계별 세부 내용

1) 준비단계

- 갈등 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
- 정보 분석
- 조정 전략 세우기
- 갈등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 확인
- 일정 및 장소 확정
- 조정 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사소통 방법 교육
- 신뢰 형성 조치

2) 도입

- 조정자와 참가자가 한 자리에 모임
- 대화의 분위기 조성/문제해결 의지 복돋움
- 조정 과정에 대한 동의 재확인
- 조정의 원칙 설명
- 기본 규칙(Groundrules) 제정
- 상호 비난은 피할 것
- 서로의 말을 경청할 것
-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말 것
- 진실만을 말할 것

※ 도입의 예

- 인사 및 자리배치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부터 소개하면 지난 ???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검찰로부터 조정을 의뢰받은 조정위원 000, @@@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서로 아시지만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0씨, 그리고 000씨입니다. 또 참관자로 참여하신 00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십니다.

- 조정의 목적 소개

오늘 이 자리의 목적은 000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손상된 것들을 회복하고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문제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본연의 일상의 업무와 생활에 잘 복귀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조정을 통해 이번 문제가 합의되지 못하는 경우 이 문제는 다시 검찰로 회부되어 일반적 절차를 따르게 됨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조정의 과정

그럼 다음으로 가족회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은 다음의 단계들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이번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풀어야 할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과 앞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할 것인가 논의하는 해결책 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해결책을 모아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로 서명함으로써 조정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 조정자들은 조정 과정을 이끌고 통제하는 책임이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된 결과는 당사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합의입니다. 따라서 저희 조정자는 여러분에게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 기본규칙 정하기

저희가 조정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하는 기본 규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첫째, 상대가 이야기 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자신의 발언시간을 기다려 이야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대를 비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행위를 삼가고 조정자의 통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 의사에 의해서만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넷째,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조정 도중에 발언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로 부쳐지며 저희는 물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후 소송 절차에 가게 되었을 때 불이익의 근거로 쓰이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드립니다.

이 규칙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만약 조정을 하면서 지금 서로 동의한 기본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저희는 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작하면서 과정에 대해 혹시 더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3) 사건 경위(사건 기록) 보고

- 경찰 또는 법원, 검찰 종사자가 참여했을 때는 이들이 간략한 사건 기록을 읽는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는 협력조정자가 읽는다.
- 보고내용이 맞는지 가해자에게 확인한다. (예, 이 보고 사실에 대해 **씨는 인정하십니까?)

4) 입장나누기

- 이 단계의 목적은 사건에 연관된 사실을 규명하고 그 행동이 모든 참석자에게 미친 충격을 밝히는 것이다. 각 참석자는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
- 조정자는 사건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반응을 깊이 있게 파헤치기 위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 입장 나누기 단계에서 진술 순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인, 피고소인(가해자) 순으로 진행한다.

① 고소인의 진술 : 고소인(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그로 인해 고소인이 받은 부정적인 결과 또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피해
- 피해로 인한 후유증

② 피고소인의 진술 :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사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 일로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 정확한 진술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이 유용할 수 있다. 가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요내용이나 손상에 대해서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자의 도덕적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 열린 질문, 적극적 듣기, 바꿔 말하다 및 요약 등이 당사자의 진술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

5) 탐색/쟁점규명

- 쟁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나가는 단계
- 조정자는 당사자들 각자의 이익, 요구,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함께 해결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① 갈등 원인의 유사점과 상이점 정리
 - ② 실제로 원하는 것 찾기
 - ③ 실익과 욕구에 기초한 쟁점으로 변화하기
 - ④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기반(Common Ground) 찾기
- 탐색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에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간다.
-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나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참석자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 시킴으로써 사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 단계에서 좀 더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가급적이면 조정자가 덜 간섭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토론이 사건과 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때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토론은 공격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다.

6) 전환

- 모든 참석자들이 사건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진 후에, 토론의 초점은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간다.
- 이 단계에 해야 할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의 변화,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이다.
-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 조정자는 사과 또는 사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감정반영과 요약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 또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이를 강화시켜야 한다.
- 이 시점에 좀 더 일반화되고 분위기가 완화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의 심각성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사건에 대한 회복이 논의되는 시점이다.

7) 대안탐색

- 이 단계는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 이 단계의 목적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참석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실행가능, 공정한 합의사항을 만드는 것이다.
- 이 단계에서 조정자는 피해자에게 사건으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도록 요청한다.
- 가해자도 피해자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낸다.

8) 합의

- 모든 참석자들은 합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토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하다면 받아들여져야 한다.
- 조정자는 모든 제안에 대해서 실행가능성과 공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 합의사항은 현실적이고 적정해야 하며, 합의사항의 내용이 범원이 그 범죄에 대해서 선고하는 형보다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 합의사항의 논의에는 합의사항의 수행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해자가 합의사행을 이행하는데 실패하면 사건은 원래 회부했던 기관으로 되돌아간다. 이것도 합의사행에 명시되어야 한다.
- 가능하다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인 합의사행에 동의해야 한다.
- 조정자는 모든 제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기록해야 한다. 최종적인 합의사행은 승인된 양식에 기록된다. 조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전에 조정자는 자신이 기록한 합의사행을 참석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
- 합의사행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되어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해야 할 일, 시간, 날짜, 기간, 종료날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합의를 위한 질문의 예

- ① 적절한 해결안을 평가할 때
 - “이 내용에 동의합니까?”
 - “이 제안의 어느 부분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제안의 어느 부분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까?”
- ② 실행가능성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할 때
 - “그것이 실행 가능합니까?”
 -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려고 합니까?”
 - “언제 그것을 할 예정입니까?”
 - “언제까지 해서 완성하려는 계획입니까?”
- ③ 한쪽이 비논리적인 요구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 “다른 사람은 이 안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지요?”
 - “이 내용이 그 쟁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나요?”
- ④ 토론자 모두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이 합의의 어떤 부분에 반대하십니까?”
 - “이 내용에 대해 왜 하고 싶지 않은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당신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9) 종료

- 이 단계의 목적은 조정을 종료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 가해자를 위해 비공식적인 재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참석자들이 커피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진다. 그 시간 동안 합의사항을 기록한다.
- 모든 참석자에게 평가질문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한다.
- 참석자들이 평가서를 기입하고 간식 시간을 가지는 동안 조정자는 합의사항을 기록한다.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마다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참석자들이 모여서 합의서를 함께 읽는다.
- 내용에 동의하면 합의서에 서명한다.
- 합의서에는 가해자, 피해자, 조정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10) 최종진술

- 각 참석자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질문한다.
- 모든 사람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 이 때 돌봄과 치유의 대화가 오간다. 조정에 대한 만족의 표현이 이루어진다.
- 조정자는 조정과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과 참석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
- 조정자는 조정의 종료를 알린다.

【관련자료 4-2】 형사조정 시나리오

1. 조정위원

*사건개요 : 피의자는 2008.11.27 · 12.6까지 피해자의 복부에 기계의 열을 가하는 의료기 체험을 하게 하여 치료일수 2주간을 요하는 복부의 접촉성화상 및 복부의 연부조직결손상을 가한 것이다.
*죄 명 : 업무상 과실치상
*조정일 : 2009년 5월 15일
*고 소 인 : 최이분, 참고인 : 최이분의 아들
*피고소인 : 김의료

2. 고소인 - 최이분(65세, 여자)

네모 의료기기 체험관에 다니다 배에 화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조금 화상을 입었는데, 둘째 날 “이렇게 데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약이라도 없냐”고 하니가 거기 직원이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면서 오히려 복 받았다고 계속 체험을 하면 낫는다고 해서 그 말만 듣고 일주일을 다녔다. 그런데 아주 살이 범벅이 되도록 심해지고 못 견디겠어서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을 갔다. 그런데 며칠 갔더니 껍질이 너무 벗겨져 안되겠다고 개인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갔다. 동네 창피해서 남편도 모르게 병원을 갔는데 대학병원까지 가려니가 남편도 알게 됐다. 그 대학병원에는 피부과가 없고 이름이 피부성형외과였다. 몸도 아프고 힘든데 대학병원이라 오래 기다리고 사람도 많아서 시끄럽고 그런 데를 2주일여 다녔더니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래서 도중에 체험관에 찾아가 이만저만하다하니가 물러진 배를 갖고 와서 원적외선 체험을 한 달을 더 하라고 했다. 책임을 진다고 그런데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주일 체험을 해서 범벅이 된 배를 갖고 어떻게 다니라는지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아들이 알게 됐다. 아들네랑 온천도 즐겨가고 그랬는데 내가 다치면서 안 가겠다고 하니 어디가 아프냐며 자꾸 물어보는 바람에 자초지종을 말하다가 그렇게 됐다. 아들은 팔쩍팔쩍 뛰면서 체험관에 쫓아갔는데, 거기 사장이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우겼다. 게다가 내가 당뇨가 있는데 지휘들한테 안 알려주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내게 뒤집어써왔다. 그건 정말 억울하다. 나에게 병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언젠가 체험관 직원들이 내 배에 난 흉터를 보고 무슨 흉이나고 묻기에 자궁 수술하느라 그렇게 됐다고 답한 것이 전부인데 당뇨가 있는 것을 속이고 안 알려줬다 한다.

아들은 이런 사람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면서 고소를 했다. 나도 나이도 있고 그동안 체험관 사람들이 살갑게 대해준 것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전화라도 한 통 해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아들 말을 듣다보니 젊은 사람들이 늙은이라고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말리지 않았다.

내가 동네 약장수들이 오면 놀러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렇게 배에 흉측한 상처를 만들도록 체험관 말만 믿고 간 것이 창피하고 아들내외 볼 면목도 없고 텐 곳에 사실이 빨리 나지 않고 흉터도 크고 보기 흉해서 속도 상한다.

고소한 사건이 경찰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더니 검찰에서 조정을 한다고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 오라고 연락이 왔다. 아들이 나가서 얘기가 들어보라고 해서 그러마고 했다.

3. 참고인 - 최이분의 아들(35세, 남자) / 부모와 따로 살고 있음.

어머니가 의료체험관에 다니다가 배에 화상을 입었다. 자식들이 뭐라 할까 봐 한동안 숨기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에서는 2도 괴사라며 지방충이 흘러내린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 어머니 말을 듣고 놀래서 의료체험관인가 뭔가를 쫓아갔더니 의료기관도 아닌 곳에서 어머니 상처가 병원에서는 화상이라는데도 화상 치료 받아봤자 아물지도 않고 낫지도 않는다면 끝끝내 자기네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우겼다고 한다. 어머니가 처음에 체험관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원적외선을 세계 쫓다 그르게 된 것인데도 내가 갔는데도 똑같이 우겼다. 게다가 우리 어머니를 갖고 홍보물로까지 삼았다고 한다. 아파드에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제일 복 받아서 이렇게 낫는다고

경찰서에 고발했더니 경찰서에서 체험관 사장하고 그 부인이 와서 우리 어머니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니 어찌니 하면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노인네들이 그 나이에 당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

을 속였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체험관 직원들이 어머니 배에 흉터 있는 거 보고 무슨 흉이냐고 물기에 자궁 수술하느라 그렇게 됐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는데 당뇨가 있는 것을 속이고 안 알려줬다 한다. 노인들 상대로 비싼 물건 팔아먹는 의뢰기 회사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어머니책임이라며 뒤집어씌우는 것을 보니 그동안 노인이라고 얼마나 함부로 대했을까 분통이 터진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갔을 때 죄송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게 끝났을 일인데, 화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기고 경찰서에서는 어머니가 당뇨를 속였다고까지 했다. 아버지가 병원 직원이어서 치료비 할인도 받고 해서 병원비도 70여만 원으로 생각보다 적게 들었고 이미 치료는 다 끝난 마당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사과는 고사하고 거짓말을 했니 마니 하면서 노인들에게 저렇게 장사 속으로 막 대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생각에 고소를 했다.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더니 검찰에서 조정을 하라고 권유했다. 마음 같아선 끝까지 가서 책임을 묻고 더 이상 노인들이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때를 보이고 싶지만, 요즘 회사 일이 바쁘고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이 눈치가 보여 경찰서고 검찰이고 조사 받으러 다니는 것이 부담돼서 일단 조정에 응하겠노라고 했다.

4. 피고소인 - 김의료(49세, 남자) / 의료계업 10년 이상 종사(체험관 운영 등)

우리 체험관에 드문드문 나오던 최이분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체험관에 쳐들어왔다. 쳐들어 온 것이 맞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계단을 올라오면서 “이놈의 새끼들 문을 닫게끔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면서 체험관에 들어와 난리를 친 모양이다.

할머니가 우리 원격외선 치료기 체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데었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치료를 계속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간혹 가다 물집이 잡히는 사람들이 있긴 해도 좀 체험을 받아보면 없어졌다. 더 심한 경우도 그랬다. 안 그러면 어찌 1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겠는가? 최이분 할머니가 물집이 심해진 것은 아마도 당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신데, 그걸 우리한테 말을 안했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몸에 감각이 떨어져서 기기를 너무 가까이 대어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 접수 받을 때 병이 있는지 다 기록하도록 한다. 그 할머니 기록에는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나중에 당뇨가 있다고 한다. 우리 체험관에는 하루에 적게는 150명 정도가 와서 체험을 하는데, 당뇨환자, 중풍환자, 암환자까지 오고 무료로 각자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교육을 처음에 한다.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를 30~40cm 정도 지키면서 체험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그런데도 나를 마치 사전 안내를 전혀 안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오리발 내미는 나쁜 사람 취급한다. 게다가 이들은 전화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집사람이나 나한테 반말로 큰 소리를 쳐댔다. 처음 난 반말을 짝씩 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고, 또 체험관에 몇 번 왔는데, 그 아들이 올 때마다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좋게 사과 받으러 오거나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돈을 뜯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발하겠다고 하기에 고발하려면 고발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진짜 고발해서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다녔단다. 도의적인 면에서 치료비는 얼마간 부담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도 있는 양반이 데어서 치료받는 걸 피파과도 아니고 성형외과도 다녔다. 어차구니가 없고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을 만났다. 게다가 무슨 법이 그런지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배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그저 할머니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못 봤다는 건데 그걸 그렇게 큰 죄로 다스려야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난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란 걸 한다고 연락이 왔다. 경찰에 불러 다닌 것도 모자라 이제 형사조정인지 뭔지까지 받으러니 화도 나고 기가 막혔지만, 영업에 지장도 있고 잘되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해서 참석하기로 했다.

4.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일정(안)

가. 당일 일정(8시간)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 일차		
-10:00	참석자 도착 및 접수	
10:00-10:30 (30분)	오리엔테이션 및 안내	
10:30-12:00 (90분)	형사조정체도의 배경과 의미 - 회복적 사법(RJ : Restorative Justice)이란?	
12:00-13:00 (60분)	점심식사	
13:00-14:50 (50분)	조정실무훈련 I	
	1. 조정의 원칙	
	2. 조정자의 역할	
15:00-16:50 (50분)	조정실무훈련 II	
	1. 조정기술	
	2. 조정의 절차와 단계	
17:00-18:00 (60분)	조정실습	

나. 1박 2일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 일차		
-13:30	참석자 도착 및 접수	
13:30-14:00 (30분)	오리엔테이션 및 시작의 시간	
14:00-15:50 (110분)	회복적 사법의 이해 -----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 2. 회복적 사법 :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 3. 회복적 사법의 실천 ----- 4. 회복적 사법의 평가	강의
16:00-17:50 (110분)	형사화해 조정의 법과 절차 ----- 1.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 이해 ----- 2. 형사화해 조정 절차	강의
17:50-19:00 (70분)	저녁 식사	
19:00-20:00 (60분)	갈등해결과 조정의 이해	강의
20:00-21:00 (60분)	분임 I -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조정의 의미 - 분임별 자유 주제 논의	토의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 간	내 용	비 고
제 2 일차		
-09:30	기상 및 아침식사	
09:30-12:00 (150분)	조정과정 훈련 - 조정과정과 절차 실습	강의 및 실습
	1. 조정과정과 절차 이해하기	
	2. 조정 사례 분석을 통한 실습	
	3. 조정자의 자세	
12:00-13:00 (60분)	점심식사	
13:00-14:50 (110분)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강의 및 실습
	1.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2. 대안탐색(브레인스토밍)	
15:00-15:50 (50분)	분임 II - 조정자의 기술 실습	실습
16:00-17:30 (90분)	조정실무 및 행정	강의 및 실습
	1. 행정 절차의 이해	
	2. 각종 양식 및 보고서 작성	
17:30-18:00 (30분)	맺는 마당	

다. 2박 3일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제 1 일차		
-13:30	참석자 도착 및 접수	
13:30-14:00 (30분)	오리엔테이션 및 시작의 시간	
14:00-16:00 (120분)	회복적 사법의 이해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2. 회복적 사법 :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3. 회복적 사법의 실천 4. 회복적 사법의 평가	강의
16:00-16:30 (30분)	coffee break	
16:30-18:00 (90분)	형사화해 조정의 법과 절차 1.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 이해 2. 형사화해 조정 절차	강의
18:00-19:30 (90분)	저녁 식사	
19:30-21:00 (90분)	분임 I -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조정의 의미 - 분임별 자유 주제 논의	토의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 간	내 용	비 고
제 2 일차		
-09:30	기상 및 아침식사	
10:00-12:00 (120분)	조정과정 훈련 I - 갈등해결과 조정의 이해	강의
	1. 갈등의 원인과 평화적 갈등해결	
	2. 조정의 원칙과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12:00-13:30 (90분)	점심식사	
13:30-15:30 (120분)	조정과정 훈련 II - 조정과정과 절차 실습	강의 및 실습
	1. 조정과정과 절차 이해하기	
	2. 조정 사례 분석을 통한 실습	
15:30-16:00 (30분)	coffee break	
16:00-18:00 (120분)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강의 및 실습
	1. 조정자의 자세	
	2. 조정자의 기술	
18:00-19:30 (90분)	저녁 식사	
19:30-21:00 (90분)	분임 II - 조정자의 기술 실습	실습
제 3 일차		
-09:30	기상 및 아침식사	
10:00-12:00 (120분)	조정실무 및 행정	강의
	1. 행정 절차의 이해	
	2. 각종 양식 및 보고서 작성	

라. 16주 장기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주차 (150분)	1. 사법의 새로운 변화 1) 회복적 사법이란? 2) 회복적 사법 vs 응보적 사법 3) 회복적 사법의 뿌리	강의
2주차 (150분)	2.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1) 사법제도가 생산한 모순 2) 피해자, 가해자, 사회의 요구 3) 처벌에서 회복으로	강의
3주차 (150분)	3. 회복적 사법의 실천 1) 피해자 가해자 조정/화해 프로그램 2) 피해자 가해자 가족 협의회 3) 진실과 화해 위원회	강의
4주차 (150분)	4. 회복적 사법의 평가 1) 정착을 위한 노력 2) 회복적 사법의 한계 3) 과거에서 미래로	강의
5주차 (150분)	5.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강의 및 실습
6주차 (150분)	6. 갈등해결의 이해 1) 갈등의 개념과 특성 2) 갈등 원인과 해결방법 3) 평화적 갈등해결의 방법	강의
7주차 (150분)	7. 조정에 대한 이해 1) 조정이란? 2)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3) 조정의 특성 4) 조정의 원칙	강의
8주차 (150분)	8. 조정 과정과 절차 1) 사전 준비 2) 조정 과정과 절차 - 도입/이야기하기 나누기/쟁점규명/대안 모색/합의	강의 및 실습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시 간	내 용	비 고
9주차 (150분)	9. 조정자의 자세 1)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 2)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성 : 양쪽 당사자 존중하기 3) 다양한 감정을 읽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4) 진행규칙을 집행하는 단호함	강의 및 실습
10주차 (150분)	10. 조정자의 기술 1) 정보수집 및 분석 2) 의사소통 기술 (1) 적극적 듣기(Active listening) ①적극적 듣기 태도 ②조정자가 삼가야 할 적극적 듣기 (2) 중립적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기(Paraphrasing) (3) 당사자들의 신체적 움직임, 감정의 변화 등에 대해 관찰하기 (4) 요약하기 (5) 효과적 질문하기	강의 및 실습
11주차 (150분)	10. 조정자의 기술 3)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1) 감정, 분노 다루기 (2) 편견 다루기 4) 대안탐색 기술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강의 및 실습
12주차 (150분)	11. 조정실무 1) 행정절차의 이해 2)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3) 보고서 작성 요령	강의 및 실습
13~16주차	종합실습	실습

제4장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일반적인 프로그램 평가모형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영역, 평가도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가. 평가의도와 목적: 조정실무가 개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충실

프로그램의 평가 의도와 목적은 가장 먼저 조정실무가 개인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처방에 충실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활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실무가의 현재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해 줌으로써 조정실무가들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나. 평가대상: 조정실무가의 활동과 체험에 바탕을 둔 전인성 평가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 대상은 조정실무가 개개인의 활동과 체험에 바탕을 둔 전인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활동과정에서 조정실무가들이 학습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 평가내용: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내용은 형사화해 조정실무가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각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라. 평가방법: 계량적 방법과 질적 접근 및 참여자 평가 조화

평가 방법과 기법은 전통적인 계량적 접근 방법과 함께 질적인 접근 및 참여자 평가 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계량적 접근 방법은 조정실무가들에게 일어나는 인지적인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는가를 일정한 도구에 의해 측정하여 계량화시키는 것이다.

질적 접근 및 참여자 평가는 조정실무가들에게 이루어지는 변화를 양적 데이터로 전환시키지 않고, 그들이 놓여있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보다 깊고 풍부하게 밝혀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 평가시기: 결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중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시기에 있어서는 결과평가보다는 과정평가를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전개과정을 더욱 중요시하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실무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성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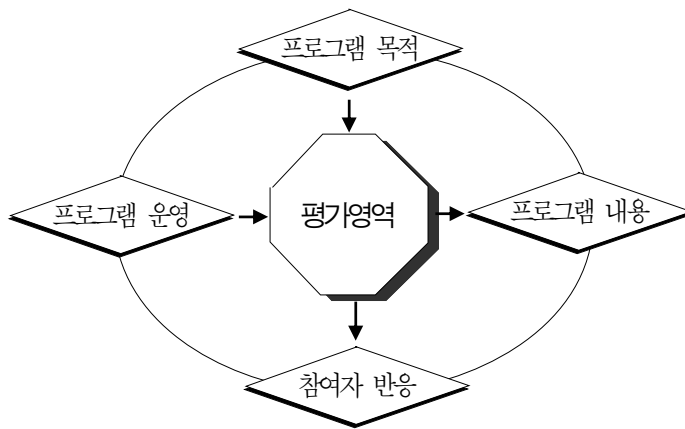
바. 평가단위: 프로그램 평가를 중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 단위는 하나의 개별 코스나 프로그램을 단위로 하여 평가를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영역

가. 평가영역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 영역은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의 내용, 참여자 반응,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 요소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림 4-1〉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영역

나.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정실무가가 회복적 사범을 이해하고, 형사화해 조정의 절차와 조정자의 역할을 이해하며,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양한 조정실습을 통하여 습득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내

용의 혁신성, 현실성, 유용성, 즉시성, 적용성, 요구반영 정도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혁신성은 기존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말하며, 현실성은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유용성은 프로그램이 실제 조정실무기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말한다.

즉시성은 개발된 프로그램이 시간적 경과조치 없이 바로 실현가능한가를 말하며, 적용성은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 적용이 가능한가, 요구반영정도는 조정실무가나 정책당국자 및 담당자의 요구가 프로그램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를 말한다.

라. 참여자 반응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조정실무기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태도, 느낌, 호감도,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 매끄럽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는가? 혹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제반 요인, 즉 시설, 매체, 수강료, 강사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3.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도구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 반응, 프로그램 운영 등 4가지의 영역별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실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운영자는 여기에서 제시한 부분을 참조하여 평가도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 프로그램 목적 달성 평가 도구

- ① 회복적 사범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 ② 형사화해조정의 법적기반과 과정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 ③ 조정자의 역할과 자세 및 조정과정과 절차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 ④ 조정자로서의 자세 이해와 조정기술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가?

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도구

- ①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력적인가?
- ② 프로그램의 내용은 신선한가?
- ③ 프로그램의 내용은 타당한가?
- ④ 프로그램의 내용은 회복적 사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⑤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정관련 법적기반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⑥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정자의 역할과 조정과정 및 절차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
- ⑦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정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 ⑧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정실무기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가?

다. 프로그램 참여자 반응에 대한 평가

- ①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 ② 기존의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많은가?
- ③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의 참여를 권유할 생각이 있는가?
- ④ 다른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 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 ⑥ 함께 참여했던 동료들의 반응은 긍정적인가?
- ⑦ 가장 재미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 ① 프로그램은 매끄럽게 운영되었는가?
- 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환경의 상태는 양호했는가?

- ③ 프로그램의 운영자의 자질은 충분했는가?
- ④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시설은 양호했는가?
- ⑤ 프로그램 운영상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⑥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 ⑦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조별 인원편성은 적절했는가?
- ⑧ 함께 참가한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가?
- ⑨ 프로그램의 기간 및 시간 편성은 적절했는가?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 주요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양성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프로그램개발팀(PDT: Program Development Team)을 구성·운영하여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시범적용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조망을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문헌연구이며, 주로 국내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국내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국외는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일본 등 4개 국가 및 지역의 조정자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현장의 내용전문가와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연구진을 중심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을 구성·운영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확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현장 적용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안)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안)은 실제 조정실무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프로그램 진행상의 참고자료와 프로그램 진행용 워크시트를 개발·첨부하였다.

넷째, 최종적으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먼저, 개발된 프로그램(안)을 이용하여 전국 약 30명의 조정실무가(조정위원)를 대상으로 하루 일정으로 시범실시하였다. 시범실시 후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전개과정과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팀의 협의를 통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①회복적 사법의 이해, ②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 ③조정과정 훈련, ④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 ⑤조정실무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회복적 사법의 이해 부분은 사법의 새로운 변화, 회복적 사법: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회복적 사법의 실천, 회복적 사법의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형사화해 조정의 법적 기반과 절차에서는 형사화해 조정 관련법의 이해, 형사화해 조정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과정 훈련에서는 갈등해결의 개념과 이해, 조정에 대한 이해, 조정 과정과 절차, 조정실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자 기술과 역량강화에서는 조정자의 자세, 조정자의 기술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정자의 기술에서는 정보수집 및 분석, 의사소통기술, 태도와 행동을 다루는 기술, 대안탐색 기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정실무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프로그램화 하지는 않았지만 행정절차, 각종 양식 작성과 이해,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이 해당된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세부내용을 설명자료를 개발·제시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별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가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활용이 지역별, 시·공간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시범실시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예시하였고, 1일 프로그램, 1박 2일 프로그램, 2박 3일 프로그램, 16주(2시간)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

여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를 위하여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평가지침, 평가영역, 평가도구(예시) 등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위와 같은 연구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정책과제들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연구 수행 중 만난 전문가들의 요구, 현장 조정실무가(조정위원)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대상별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매뉴얼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및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운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제 조정행위를 하는 조정위원의 프로그램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성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회복적 사법을 이해하고, 조정자의 역할을 인식하며, 조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들의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여 실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강사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강사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홍보와 보급이 필요하다. 실제 형사화해 조정위원의 대부분은 변호사나 퇴직 교원, 지역사회 유지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는 조정의 원칙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나 각 센터들이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필요한 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보급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위원들이 대부분 다른 직업과 겸임해서 조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 지정·운영이 필요하다.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를 전담할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앙교육훈련센터로 두고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역 교육훈련센터로 지정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은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형사화해 조정실무가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을 직무연수 형태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보급이나 연수를 위한 전문연수도 필요하다.

여섯째, 형사화해 조정실무가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비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만난 본 조정위원들의 경우, 필요에 의해 연수에 참여하지만 연수경비를 자부담하고 있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초기에는 과감하게 연수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참여를 독려하여 전문적인 자질을 높일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1. 국내문헌

- 김동영. (2008). 갈등해결 시스템의 개선과 설계의 원칙, 젠더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서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김은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 제2부 새로운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사법의 실제와 전망-회합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광섭, 김성돈. (2006).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수선. (2008). 평화전문기양성을 위한 평화교실.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송길용. (2007).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매뉴얼. 서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이동원, 조용업. (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 형사조정프로그램에 대한 실증적 평가 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광훈. (200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월간법조 620호. 서울: 법조협회.
- 최창욱, 권일남. (2004). 청소년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 갈등원천, 갈등해결유형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김정주, 조영희. (2005). 청소년 갈등해결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탁희성, 강우예. (2008).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I) -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6). 사회통합과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조정·진행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7). 조정전문가훈련과정 자료집. 서울: 평화

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회복의 여정, 평화적 갈등해결의 현장을 찾아. 캐나다 연수보고서. 서울: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9).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다 - 회복적 사법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성과와 과제. 2009 갈등해결센터 토론마당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9). 회복의 여정, 평화적 갈등해결의 현장을 찾아서.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9). 회복적 사법 ‘피해자기해자대화모임’ 조정자훈련과정 자료집. 서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황지태, 노성호 (2006). 회복적 소년사법 조정실무가 실행지침.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외국문헌

Barajas, E. (1997). Speak Out! Community Justice: Bad Ways of Promoting a Good Idea. *Perspectives* 20(3).

Barsky, A. E. (2005). *갈등해결의 기법* (한민영, 이용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5 출판)

British Columbia Association for Community Living. (2006). RESTORATIVE JUSTICE - And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2009; http://www.bcacl.org/documents/CL_Booklet_RJ_Facilitators.pdf.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2009: <http://www.csc-scc.gc.ca/text/rj/vom-eng.shtml>.

Crawford, D., & Bodine, R. (1996).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s in Schools, Youth-Serving Organizations, and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2004). *Recommendations on the Training of Mediators in Criminal Matters*.

European Forum for Restorative Justice; 2009;<http://www.euforumtj.org/About/>

background.htm

- Gilman, E., & Bowler, C. (2004). *Inviting Dialogue: Restorative Justice & Victim Offender Mediation Training Manual Fifth Revised Edition*. Fraser Region Community Justice Initiative Association.
- Ministry of Justice New Zealand(2003). *조정실무가 훈련매뉴얼*, 2009; <http://www.courts.govt.nz/crrj/manual>
- Mohr, J. W. (1991). *Criminal Justice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The Secularization of Criminal Law*.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Annual Meeting.
- New Zealand Ministry of Justice, Tāhū o te Ture. (2008). *Facilitator Training Manual, Court-referred Restorative Justice, 2009* <http://www.justice.govt.nz/crrj/manual/>
- The Scottish Restorative Justice Consultancy and Training Service. (2008). *An Overview of Restorative Justice in Scotland*(Version 1.10), 2009; <http://www.restorativejusticescotland.org.uk>.
- UN Office on Drugs and Crime(2006). *Handbook on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s Online version*, 2009;http://www.unodc.org/pdf/criminal_justice/06-56290_Ebook.pdf
- Van Ness, D., & Strong, K. H. (1997). *Restorative Justice*. NY: Anderson Publishing Co.
- Wilson, R.(2001). *The Politics of Truth and Reconciliation in South Afric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ehr, H. (1990).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Scottdale, Pa: Herald Press.
- 少年對話會 研究報告, 日本警察廳生活安全局少年課 警察廳丁少登第 229号, 2007.11.21.
- ポラテア進行役4日間研修プログラム,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プログラム,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 對話へのあゆみ, 被害者加害者對話の會運營センター- 機關紙 No.3, 2009.4.1.

Abstract

A Study on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raining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Choi, Chang-Wook · Park, Su-Seon
Nam, Hwa-Sung · Lee, Young-Min

1.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training program for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In order to meet this purpose, a program development team was formed to analyze existing mediation training programs and to develop an experimental program. After applying an experimental program, the team completed the final version of training program.

2. Methodology

First, prior to program development, research was done on the various theoretical analysis of training programs of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The main critical apparatus were dissertations from Korea and abroad, research papers, independent journals, and internet resources.

Second, the team did case studies on existing training programs for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Training programs designed by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Conflict Resolution Center in Women Making Peace were used and other training programs from foreign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Canadian, Japanese, and European.

Third, the team designed the contents of a training program which could apply to the field of mediation in criminal justice. The program development team consisted of program developers, mediators, and researchers. References and work-sheets for mediators were also included for application.

Fourth, the team conducted a day training workshop for 30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using the newly developed training program. The final training program was completed based on an evaluation of the training program.

3. Results

First,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discussions among program development team members, the following 5 sessions wer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raining program for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①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② the legal foundation and process of mediation in criminal justice, ③ training mediation process, ④ skill development and empowerment for mediators, ⑤ the practice of mediation.

Second, more details about each session as follows;

①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e meaning of Restorative Justice, the goals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and the evaluation of Restorative Justice.

② the legal foundation and process of mediation in criminal justice: introduction of legal base for mediation in criminal justice, and the process of mediation in legal system.

③ training mediation process: introduction of conflict resolution, understanding of mediation, mediation procedure.

④ skill development and empowerment for mediators: attitude of media-

tors, skills for mediators, especially focusing on information gathering, conflict analysis, communication skills, problem solving, etc.

⑤ the practice of mediation: administration work for mediators, documentation, reporting, etc.

Third, Each session provides detailed instruction and explanation in order for training program to be easily used for trainers in training of mediators. Fourth, the training program is designed to be easily adopted into different settings. For example, a day workshop, 2 day workshop, 3 days workshop, or 16 week (2 hours each) workshop can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 of mediation centers.

Fifth, the training program includes evaluation procedures (evaluation guideline, evaluation tools, evaluation areas, etc) to help program coordinators carry their work more effectively.

4. Recommendations for Policy

Based on this research project on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for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following 6 agendas are strongly recommended in policy making and application processes.

First, generalized manual can be useful as a guideline and sample but it is important to develop customized training manuals based on the needs and circumstances of each victim support center where mediation cases of criminal justice are actually dealt.

Second, the number of trainers who can provide quality training in mediation for mediators who deal criminal justice cases needs to be increased. Nation-wide, there are only few mediation trainers who have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and the experience of mediation skills. The lack of quality trainers often jeopardizes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mediation training.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e number of

trainers led by Ministry of Justice or Korea Crime Victim Center.

Third, it is critical to advertize the newly developed training program to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In fact, the majority of current mediators are lawyers, retired teachers, and local community leaders who do not get quality training. Most mediators are aware of the need of mediation skill training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Restorative Justice.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enough time for training them since they are also busy with their own occupations and other works. Thus, developing online training materials would be beneficial for those who do not have time to come for training programs.

Fourth, current training program is very limited in terms of length and content. It will be necessary that Ministry of Justice appoints some training centers and support their operations. The training unit of the Korea Crime Victim Center can be used for this purpose. Local crime victim centers can be used for this purpose as well.

Fifth, current training programs for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are short term approach and temporary. They don't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and contents for mediators. Training programs should be continuously provided on a regular basis and in-depth training or updated training is needed as well. Sixth, financial support is also important for mediators. Mediators who volunteer their time and effort should not be charged for their own training. The government needs to encourage mediators in criminal justice to take training program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ther support systems. In doing this, the quality of mediators can be improved.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09-04-02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II)
-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방안 -
형사화해조정을 위한 조정실무가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연구**

- 발 행 / 2009년 12월
- 발행인 / 박상기
-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5
-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 인 쇄 / (주)이환기획인쇄
(02)764-1116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769-7